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2-371호

「종자관리요강」(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1-23호, 2021. 4. 13.)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27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종자관리요강」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식량작물의 수입적응성시험* 실시기관을 변경하여 수입적응성시험의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업계 등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개선하려는 것임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물(94작물)로서 국내에 처음으로 수입되는 품종의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하기 위해 수입 시 적응성시험 실시 (농업인의 불량 종자 사용으로 인한 피해 방지)

2. 개정 내용

가. 「종자관리요강」 제24조(수입적응성시험의 대상작물 및 신청 등) 별표 11의 식량작물 수입적응성시험 실시기관을 현행 농업기술실용화재단(現 한국농업기술원)에서 한국종자협회로 변경

* (현행) 농업기술실용화재단 → (개정) 한국종자협회

3. 의견제출

이 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17일(월)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종자생명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라. 의견제출 방법 :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

1) 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

2) 팩스 : 044-868-9172

3) 전자우편(이메일) : mirjam@korea.kr

마. 기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법령 정보→입법·행정 예고)에서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1] 개정고시 전문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2 - **호

「종자관리요강」(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1-23호, 2021.4.13.)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2년 **월 **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종자관리요강

제정 2008. 11. 14,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8-100호
일부개정 2009. 7. 31,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9-74호
폐지제정 2010. 12. 16,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10-133호
일부개정 2011. 11. 2,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11-177호
폐지제정 2012. 11. 14,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12-268호
폐지제정 2013. 11. 28,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3-302호
일부개정 2014. 3. 17,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4-30호
일부개정 2016. 10. 28,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6-138호
일부개정 2017. 8. 1,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7-65호
일부개정 2020. 6. 19,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0-48호
일부개정 2021. 4. 13,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1-23호
일부개정 2022.00.00.(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2- **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강은 「종자산업법」 및 「식물신품종 보호법」, 각각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육성자의 권리보호

제2조(품종의 특성설명)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종의 특성설명은 별표 1과 같으며, 특성설명을 위한 작물별 조사형질 및 조사방법 등은 국립종자원장·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산림청장이 정한다

제3조(사진의 제출)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호에 따른 사진의 제출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종자시료의 제출)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제40조제2호에 따른 종자시료의 제출은 국립종자원장·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산림청장(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5조(재배심사의 판정기준 등) ①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제47조제2항에 따른 재배심사의 판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재배심사를 함에 있어서 심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육성자의 포장에서 현지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①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제35조

제2항에 따른 종자의 총판매수량 또는 총판매예정수량은 유상으로 처분하는 국유품종보호권의 실시기간 중 매 연도별 판매수량 또는 판매예정수량을 합계한 것으로 본다.

②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제35조제2항에 따른 종자의 판매예정단가는 유상으로 처분하고자 하는 국유보호품종과 유사한 품종의 최근 3년간 평균판매가격으로 한다.

③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제35조제2항에 따른 기본율은 유상으로 처분하고자 하는 국유품종보호권을 이용하여 생산한 종자의 총판매가격 또는 총판매예정가격의 2퍼센트로 하되, 그 국유품종보호권의 보호품종의 우수성 및 실용가치를 참작하여 1퍼센트 이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

제 3 장 품종성능의 관리

제7조(사진의 제출)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1호에 따른 사진의 제출은 별표 2와 같다.

제8조(종자시료의 제출)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1호에 따른 종자시료의 제출은 국립종자원장 또는 산림청장(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9조(품종성능의 심사기준) <삭제 2002.11.13.>

제10조(종자생산대행의 확인) ① 「종자산업법」 제22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호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대행하여 종자를 생산하고자 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도지사'로 한다) 또는 관할 국립종자원 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종자생산대행신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국립종자원 지원장은 그 포장에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때에는 종자생산포장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종자생산대행확인서를 해당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작물의 생육에 적합한 통풍과 채광이 양호하고 지력이 비옥·균일할 것
2. 병충해 발생 및 침수해의 상습지대가 아닐 것
3. 관수 및 배수가 용이할 것
4. 포장격리가 가능한 포장조건을 갖춘 지대일 것

제 4 장 종자의 보증

제11조(국가보증의 대상) <삭제 2014.08.29.>

제12조(포장검사 등의 검사기준)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포장검사, 종자 검사 및 재검사의 작물별 검사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13조(포장의 종류 및 포장단위)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종자검사 및 재검사를 함에 있어서 포장의 종류 및 포장단위는 별표 7과 같다.

제14조(사후관리시험의 대상작물) 「종자산업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사후관리 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는 작물은 「종자산업법」 제15조에 따른 국가품종목록의 등재대상작물로 한다.

제15조(사후관리시험의 기준)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사후관리시험의 검사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제 5 장 종자의 유통

제 1 절 종자업등록

제16조(종자업등록번호 등) ①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종자업등록번호 또는 별지 제19호의2서식에 따른 육묘업등록번호의 작성방법은 별표 9와 같다.

② <삭제>

제17조(종자업등록사항의 변경통지) <삭제 2002.11.13.>

제18조(종자업등록증의 재교부신청) <삭제 2002.11.13.>

제 2 절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

제19조(사진의 제출)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진의 제출은 별표 2와 같다.

제20조(종자시료의 제출)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자시료의 제출은 국립종자원장 또는 산림청장(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21조(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번호)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번호의 작성방법은 별표 9와 같다.

제22조(종자를 정당하게 취득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의 범위)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제7호에 따라 그 품종의 종자를 정당하게 취득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 기재된 거래명세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와 같다.

1.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제7호 전단에 따른 거래당사자의 성명, 서명, 품종명, 거래일시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 기재된 거래명세서: 판매자(또는 양도자)가 발부한 작물명, 품종명, 수량, 판매업자명(또는 상호명), 거래일자 및 판매자의 서명 등 취득경로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사항을 포함. 이 경우 해당 품종이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제7호 후단에 따른 품종으로서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7조에 따른 신규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제7호 후단에 따른 해당 품종의 실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육성자권리의 출원인 또는 그 밖에 육성자권리를 가진 자로부터 사용 동의(성명 및 서명 포함), 권리범위(증식, 생산, 판매 등 행위), 사용범위(품종명, 기간, 수량, 사용 국가명), 계약일자, 구매자(도입자)의 성명(서명 포함) 등의 사항을 포함

제23조(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 취소) ①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를 허위로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국립종자원장 또는 산림청장(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신고 수리를 취소하고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자가 신고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 취소신청서를 국립종자원장 또는 산림청장(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 취소신청을 받

은 국립종자원장 또는 산림청장(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취소하여야 한다.

제 3 절 수입적응성시험

제24조(수입적응성시험의 대상작물 및 신청 등) ①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른 수입적응성시험 대상작물과 실시기관은 별표 11과 같다.

② 「종자산업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수입적응성시험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대상작물 실시기관의 장에게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수입적응성시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수입적응성시험의 대상작물) <삭제 2016.10.28>

제26조(수입적응성시험의 심사기준)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른 수입적응성시험의 심사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제27조(수입적응성시험계획서의 검토) ① 실시기관의 장은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제출한 수입적응성시험계획서(이하 “시험계획서”라 한다)의 적정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수입적응성시험신청인(이하 “시험자”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실시기관의 장은 시험계획서가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명할 수 있다.

③ 실시기관의 장은 수입적응성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을 검토·심의하기 위하여 수입적응성시험 심의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제28조(수입적응성시험결과의 제출) 시험자는 시험계획서에 따라 실시한

시험결과에 대한 종합평가서를 작성하거나 대학 및 정부 연구기관에서 실시한 시험성적이 있을 경우 그 결과를 첨부하여 실시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수입적응성검토·심의) ①실시기관의 장은 제28조에 따라 제출된 종합평가서 등을 취합하여 검토 또는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②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검토하거나 심의결과 수입적응성이 인정된 품종은 별지 제7호서식의 수입적응성시험확인품종목록에 등재하고, 그 결과를 국립종자원장 및 시험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0조(수입적응성시험의 확인 등) ①판매용으로 종자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실시기관의 장에게 수입적응성시험확인 및 「관세법 제226조에 의한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 고시(관세청고시)」에 따른 수입요건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수입적응성시험확인 및 수입요건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신청서를 실시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입적응성시험확인 : 별지 제8호서식 수입적응성시험확인신청서
2. 수입요건확인 : 별지 제9호의2 서식 수입요건확인(신청)서

③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실시기관의 장은 제29조제2항에 따른 수입적응성시험확인품종목록 등재사항을 확인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수입적응성시험확인서 및 별지 제9호의2서식 수입요건확인서를 해당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국립종자원장은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른 품종의 수입판매신고서 첨부하는 실시기관의 장이 발행한 수입적응성시험확인서가 제29조제2항에 따라 수입적응성이 인정된 품종으로 통보받은 품종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 4 절 행정처분의 통보 등

제31조(행정처분의 통보) 시장·군수는 「종자산업법」 제39조에 따라 종자업자에게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종자업등록번호, 영업소의 명칭, 처분내용, 처분기간 등을 명시하여 행정처분사항을 국립종자원장 또는 산림청장(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및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2조(유해한 잡초종자의 종류) 「종자산업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른 유해한 잡초종자의 종류는 식물방역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잡초(그 씨앗을 포함한다)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을 잡초로 한다

제33조(특정 병해충의 종류) 「종자산업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른 특정 병해충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물방역법시행규칙 별표 1에서 정하는 병해충
2.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 또는 산림청장이 정하는 병해충

제34조(규격묘의 규격기준)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규격묘의 규격기준은 별표 14와 같다.

제35조(규격묘의 표시) ①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묘목을 판매하거나 보급하려는 자는 최대 10주 단위로 규격묘 품질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단, 종자업자와 최종 소비자간 직거래로 단일품종을 판매할 경우에 한하여 주수와 상관없이 하나의 규격묘 품질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 ② 한번 사용한 규격묘 품질표지는 다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 ③ 제1항에 따른 규격묘의 표시는 별표 15와 같다.

제36조(조사용 종자의 수거) 「종자산업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종자의 수거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수거대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한다.

2. 종자의 수거량은 제20조의 제출량 기준에 따른다.

3. 종자의 수거방법

가. 관계공무원은 수거대상 종자시료를 시료제공자의 입회 하에 시료제공자 보관용 5분의1, 검사용 5분의4 비율의 2봉투로 분할하여 각각 봉인한다.

나. 관계공무원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종자시료수거확인서를 3부 작성하여 그 중 1부는 검사용 종자시료와 함께 검사기관인 국립종자원장 또는 산림청장(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에게 송부하고, 그 중 1부는 보관용 종자 시료와 함께 시료제공자에게 발급하되 발급일로부터 1년간 보관하게 하여야 하며, 나머지 1부는 해당 종자시료를 생산한 종자업자에게 통보하여 종자시료로 제공된 실량을 시료제공자에게 무상공급하게 하여야 한다.

다. 수거대상종자는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품종보호권이 설정등록된 보호품종의 종자, 「종자산업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국가품종목록에 등재된 품종의 종자 또는 「종자산업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생산·판매신고된 품종의 종자로서 「종자산업법」 제43조에 따른 품질 표시가 되어 있고 개포장이 되어 있지 않은 종자이어야 한다.

4. 제3호 가목에 따른 검사용 종자시료봉투의 전면 기재사항은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5. 국립종자원장 또는 산림청장(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실검사용 종자시료를 종자업체별 품종별로 무작위 추출하여 그 중 2분의1은 공시하고 나머지 2분의1은 봉인하여 1년간 보관을 하여야 하며, 실검사에 사용되지 않은 남은 종자는 즉시 해당 종자업자에게 반송하여야 한다.

제37조(종자수거 등) ① 관계공무원이 「종자산업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이 법에 위반하여 생산 또는 판매되고 있는 종자를 수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수거목록서 2부를 작성하여 그 중 1부는 수거 당시 해당 종자를 소유 또는 소지하고 있던 자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1부는 수거된 종자의 보관기간이 경과될 때까지 비치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불법 또는 불량종자의 유통방지를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역별 책임제에 의한 단속 또는 시·군·구간 교체단속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단속실적을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다음 연도 1월2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02.11.13.>

제38조(보관하기 곤란한 종자) 「종자산업법」 제45조제3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보관하기 곤란한 종자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작물의 종자는 별표 16과 같다.

제 6 장 종자산업의 기반 조성

제39조(종자산업진흥센터 시설기준) ① 종자산업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른 종자산업진흥센터(이하 “진흥센터”라 한다)의 시설기준은 별표17과 같다.

제 7 장 기타

제40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

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22-**호, 2022. 00. 0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품종의 특성설명(제2조 관련)

1. 특성조사장소 :
2. 특성조사자 성명 :
3. 특성조사년도 :
4. 대조품종명 :
5. 품종특성표

번호	특성	표현형태	계급	출원품종		대조품종	
				계급치	실측치	계급치	실측치
1							
2							
3 · ·							

6. 기타

육성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품종의 특성(타 품종과 구별되거나, 육성 당시 육성목표 형질)에 대해서 기록한다.

[별표 2]

사진의 제출규격(제3조 및 제7조 관련)

1. 사진의 크기

4" × 5"의 크기이어야 하며, 실물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2. 사진의 색채

원색으로 선명도가 확실하여야 한다.

3. 촬영부위 및 방법

가. 품종보호 출원품종의 경우

- 1) 구별성이 잘 나타나도록 해당 특성을 대조품종과 함께 촬영한 사진
(대조품종과 함께 촬영할 수 없는 경우는 대조품종의 해당특성을 별도로 촬영하여 출원품종과 대비한 사진)
- 2) 균일성이 잘 나타나도록 포장에서 식물체 집단을 촬영한 사진
(대조품종의 사진도 포함함)

나. 국가품종목록 등재신청품종의 경우

- 1) 식물체의 특성 및 품종의 성능을 나타낼 수 있도록 촬영한 사진
(예 : 수량 관련, 품질관련, 내재해성, 가공성 관련특성 등)
- 2) 품종의 식물체 집단 및 특정부분을 촬영한 사진
(예 : 식물의 이삭, 종실, 수확물 등)

다. 생산·수입판매신고품종의 경우

- 1) 식량작물 : 수확기 포장의 전경, 이삭특성, 종실특성이 나타나야 한다.
- 2) 채소작물 : 생육최성기(과채류) 또는 수확기(엽근채류)의 생육상태가 나타나야 하며 식용부위의 측면, 상면, 횡단면 또는 종단면이

나타나야한다.

- 3) 과수작물 : 과실 성숙기의 모수(3주이상) 전경과 과실의 측면, 상면, 하면, 횡단면 또는 종단면이 나타나야 한다. 다만, 포도 등 과실의 크기가 작은 경우에는 과방의 측면만 나타낼 수 있다.
- 4) 화훼작물 : 개화기의 포장전경 및 꽃의 측면과 상면이 나타나야 한다.
- 5) 특용작물 : 가목 내지 다목의 경우에 준한다.
- 6) 사료 및 녹비작물 : 수확기 포장의 전경, 이삭특성이 나타나야 한다.
- 7) 버섯작물 : 버섯이 제일 많이 생육된 장면이 나타나야 하며 수확직 전의 버섯의 횡단면 또는 종단면이 나타나야 한다.
- 8) <삭제 2002.11.13.>

4. 제출방법

사진은 A4 용지에 붙이고 하단에 각각의 사진에 대해 품종명칭, 촬영 부위, 축척과 촬영일시를 기록한다.

5. 제출매수 : 각 1매

[별표 3] <삭제 2010.12.16>

[별표 4]

재배심사의 판정기준(제5조제1항 관련)

1. 구별성의 판정 기준

- 가. 구별성의 심사는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한다.
- 나. 구별성이 있는 경우라는 것은 신품종심사를 위한 작물별 세부특성조사 요령에 있는 조사특성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의 특성이 대조품종과 명확하게 구별되는 경우를 말한다.
- 다. 잎의 모양 및 색 등과 같은 질적특성의 경우에는 관찰에 의하여 특성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계급으로 표현하여 출원품종과 대조품종의 계급이 한 등급 이상 차이가 나면 출원품종은 구별성이 있는 것으로 판정한다.
- 라. 잎의 길이와 같은 양적특성의 경우에는 특성별로 계급을 설정하고 품종 간에 두 계급 이상의 차이가 나면 구별성이 있다고 판정한다. 다만, 한 계급 차이가 나더라도 심사관이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별성이 있는 것으로 판정할 수 있다. 계급을 설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실측에 의한 통계처리 방법을 이용하되, 두 품종간에 유의성이 있는 경우에 구별성이 있는 것으로 판정할 수 있다.

2. 균일성의 판정 기준

- 가. 균일성의 심사는 동일한 번식의 단계에 속하는 식물체가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한다.
- 나. 신품종심사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품종의 조사특성들이 당대에 충분히 균일하게 발현하는 경우에 균일성이 있다고 판정한다. 즉, 출원품종 중에서 이형주의 수가 작물별 균일성 판정기준의 수치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출원품종은 균일성이 있다고 판정한다.

3. 안정성의 판정 기준

- 가. 안정성의 심사는 반복적인 증식의 단계에 속하는 식물체가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한다.
- 나. 안정성은 출원품종이 통상의 번식방법에 의하여 증식을 계속 하였을 경우에 있어서도 모든 번식단계의 개체가 위의 구별성의 판정에 관련된 특성을 발현하고 동시에 그의 균일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판정한다.
- 다. 안정성은 1년차 시험의 균일성 판정결과와 2년차 이상의 시험의 균일성 판정결과가 다르지 않으면 안정성이 있다고 판정한다.

[별표 5] <삭제, 2002.11.13.>

포장검사 및 종자검사의 검사기준(제12조 관련)

1. 용어의 정의

- 가. 백분율(%) : 검사항목의 전체에 대한 중량비율을 말한다. 다만 발아율, 병해립과 포장 검사항목에 있어서는 전체에 대한 개수비율을 말한다.
- 나. 품종순도 : 재배작물 중 이형주(변형주), 이품종주, 이중종자주를 제외한 해당품종 고유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는 개체의 비율을 말한다.
- 다. 이형주(off type) : 동일품종 내에서 유전적 형질이 그 품종 고유의 특성을 갖지 아니한 개체를 말한다.
- 라. 포장격리 : 자연교잡이 일어나지 않도록 충분히 격리된 것을 말한다.
- 마. 작황균일 : 시비, 제초, 약제살포 등 포장관리상태가 양호하여 작황이 고르게 좋은 것을 말한다.
- 바. 제거 : 포장에서 검사규격상 불필요한 것을 뽑아 없애는 것을 말한다.
- 사. 소집단(lot) : 생산자(수검자)별, 종류별, 품위별로 편성된 현물종자를 말한다.
- 아. 1차시료(primary sample) : 소집단의 한 부분으로부터 얻어진 적은 양의 시료를 말한다.
- 자. 합성시료(composite sample) : 소집단에서 추출한 모든 1차시료를 혼합하여 만든 시료를 말한다.
- 차. 제출시료(submitted sample) : 검정기관(또는 검정실)에 제출된 시료를 말하며 최소한 관련 요령에서 정한 양 이상이어야 하며 합성시료의 전량 또는 합성시료의 분할시료이어야 한다.

- 카. 원원종 : 품종 고유의 특성을 보유하고 종자의 증식에 기본이 되는 종자를 말하며, “원원종포”라 함은 원원종의 생산포장을 말한다.
- 타. 원종 : 원원종에서 1세대 증식된 종자를 말하며, “원종포”라 함은 원종의 생산포장을 말한다.
- 파. 보급종 : 원종 또는 원원종에서 1세대 증식하여 농가에 보급하는 종자를 보급종 또는 보급종 I 이라 말하며, 보급종 II는 보급종을 1세대 다시 증식한 것을 말하고, “채종포(또는 증식포)”라 함은 보급종의 생산포장을 말한다.
- 하. 검사시료(working sample) : 검사실(분석실)에서 제출시료로부터 취한 분할시료로 품위검사에 제공되는 시료이다.
- 거. 분할시료(sub-sample) : 합성시료 또는 제출시료로부터 규정에 따라 축분하여 얻어진 시료이다.
- 너. 봉인(sealing) : 종자가 들어있는 컨테이너(용기)나 포장이 파괴되거나 손이간 흔적을 남기지 않고는 다시 종자를 넣거나 뺄 수 없도록 봉하는 것을 말한다.
- 더. 수분 : $103\pm 2^{\circ}\text{C}$ 또는 $130-133^{\circ}\text{C}$ 건조법에 의하여 측정된 수분을 말하며 이와 같은 동등한 측정결과를 얻을 수 있는 전기저항식 수분계, 전열 건조식수분계, 적외선조사식수분계 등에 의하여 측정된 수분을 말한다.
- 러. 정립 : 이종종자, 잡초종자 및 이물을 제외한 종자를 말하며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1) 미숙립, 발아립, 주름진립, 소립
 - 2) 원래크기의 1/2이상인 종자쇄립
 - 3) 병해립(맥각병해립, 균핵병해립, 깜부기병해립 및 선충에 의한 충영립을 제외한다)

4) 목초나 화곡류의 영화가 배유를 가진 것

며. 발아 : 실험실에서의 종자의 발아란 알맞은 토양조건에서 장차 완전한 식물로 성장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키는 묘의 단계까지 필수구조들이 출현하고 발달된 것을 말한다.

버. 발아율 : 일정한 기간과 조건에서 정상묘로 분류되는 종자의 숫자비율을 말한다.

서. 이종종자 : 대상작물 이외의 다른 작물의 종자를 말한다.

어. 이품종 : 대상품종 이외의 다른 품종을 말한다.

저. 잡초종자 :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잡초의 괴근, 괴경 및 종실과 이와 유사한 조직을 말한다. 다만, 이물질로 정의된 것을 제외한다.

처. 메성배유개체출현율 : 찰성벼, 보리, 밀, 옥수수 등에서 키세니아 현상으로 일어나는 메성전분배유소지 개체의 출현율을 말한다.

커. 이물 : 정립이나 이종종자로 분류되지 않는 종자구조를 가졌거나 종자가 아닌 모든 물질로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1) 원형의 반 미만의 작물종자 쇠립 또는 피해립
- 2) 완전 박피된 두과종자, 십자화과 종자 및 야생겨자종자
- 3) 작물종자 중 불임소수
- 4) 맥각병해립, 균핵병해립, 감부기병해립, 선충에 의한 충영립
- 5) 배아가 없는 잡초종자
- 6) 회백색 또는 회갈색으로 변한 새삼과 종자
- 7) 모래, 흙, 줄기, 잎, 식물의 부스러기 꽃 등 종자가 아닌 모든 물질

터. 피해립 : 발아립, 부패립, 충해립, 열손립, 박피립, 상해립 및 기타 기계적 손상립으로 이물에 속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퍼. 기타 위에 명시된 용어의 정의 외에는 ISTA의 종자검정규정에 따른다.

허. 모수 : 원원종 또는 원종 등에서 유래된 무성 번식체로서 보급종 생산

용 재료(대목, 접수, 삼수 등)를 생산하기 위해 사용되는 식물체를 말하고, “모수포”라 함은 모수가 식재되어 있는 포장을 말한다.

고. 무병(virus free) 묘목 : 바이러스 무병화 과정(열처리, 생장점 배양 등)을 거친 묘목 또는 포장검사 대상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묘목을 말한다.

노. 격리망실 : 출입문 시건장치와 진딧물 등의 해충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는 시설이 구비되어 있는 망실을 의미하며, 망실의 그물망 격자 크기는 $0.5 \times 0.7 \text{ mm}$ 이하 이어야 한다.

도. 미숙립율 : 벼의 껍질을 벗긴 현미만을 정선하여 1.7mm 줄체를 통과한 미숙현미의 무게를 전체 현미의 무게로 나눈값의 비율을 말한다.

2. 포장검사 및 종자검사 규격

가. 벼

1) 포장검사

가) 검사시기 및 회수 : 유숙기로부터 호숙기 사이에 1회 검사한다. 다만, 특정병에 한하여 검사횟수 및 시기를 조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나) 포장격리 : 원원종포·원종포는 이품종으로부터 3m 이상 격리되어야 하고 채종포는 이품종으로부터 1m 이상 격리되어야 한다. 다만, 각 포장과 이품종이 논둑 등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다) 전작물 조건 : 없음

라) 포장조건 : 파종된 종자는 종자원이 명확하여야 하고 포장검사시 1/3 이상이 도복 (생육 및 결실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도복은 제외)되어서는 아니 되며, 적절한 조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잡초가 발생되었거나 작물이 왜화·훼손되어서는 아니 된다.

마) 검사규격

항목 채종단계		최저한도(%) 품종순도	최고한도(%)				작황	
			이종 종자주	잡초		병주		
				특정해초	기타해초	특정병		기타병
원원종포		99.9	무	무	-	0.01	10.00	균일
원종포		99.9	무	0.00	-	0.01	15.00	균일
채종포	1세대	99.7	무	0.01	-	0.02	20.00	균일
	2세대	99.0						

※ 정의

- 특정해초 : 피를 말한다.
- 특정병 : 키다리병, 선충심고병을 말한다.
- 기타병 : 도열병, 깨씨무늬병, 흰잎마름병, 잎집무늬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오갈병, 이삭누룩병 및 세균성벼알마름병을 말한다.

2) 종자검사

검사규격

항목 채종단계		최저한도(%) 정립 발아율		최고한도(%)										
				수분	이품 종	이종 종자	잡초종자			피해 립	병해립		이물	메벼 출현율
							특정 해초	기타 해초	계		특정병	기타병		
원원종		99.0	85	14.0	0.02	0.02	무	0.03	0.05	2.0	2.0	5.0	1.0	0.2
원종		99.0	85	14.0	0.05	0.03	무	0.10	0.10	3.0	5.0	10.0	1.0	0.4
보급종		98.0	85	14.0	0.10	0.05	0.00	0.10	0.20	3.0	5.0	10.0	2.0	0.6

※ 보급종 정립 중 미숙립을 최고한도는 4.0% 이하로 한다.

※ 정의

- 특정해초 : 포장검사규격에 준한다.
- 기타해초 : 물달개비, 여뀌, 마디꽃, 논뚝외풀, 사마귀풀 및 올챙이 고랭이를 말한다.
- 특정병 : 포장검사규격에 준한다.

○ 기타병 : 도열병, 깨씨무늬병 및 이삭누룩병을 말한다.

나. 겉보리, 쌀보리 및 맥주보리

1) 포장검사

- 가) 검사시기 및 회수 : 유숙기로부터 황숙기 사이에 1회 실시한다.
- 나) 포장격리 : 벼에 준한다.
- 다) 전작물 조건 : 품종의 순도유지를 위하여 2년 이상 윤작을 하여야 한다.
다만, 경종적 방법에 의하여 혼종의 우려가 없도록 담수처리, 객토, 비닐멀칭을 하였거나, 타 작물을 앞그루로 재배한 경우 및 이전 재배 품종이 당해 포장검사를 받는 품종과 동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라) 포장조건 : 벼에 준한다.
- 마) 검사규격

항 목		최저 한도(%)	최고 한도(%)				작 황		
			품종순도	이종 종자주	잡초			병주	
					특정해초	기타해초		특정병	기타병
원원종포		99.9	0.01	-	-	0.10	10.00	균일	
원종포		99.9	0.01	-	-	0.10	15.00	균일	
채종포	1세대	99.7	0.05	-	-	0.40	20.00	균일	
	2세대	99.0							

※ 정의

- 특정병 : 겉감부기병, 속감부기병 및 보리줄무늬병을 말한다.
- 기타병 : 흰가루병, 줄기녹병, 줌녹병, 붉은곰팡이병 및 바이러스병을 말한다.

2) 종자검사

□ 검사규격

항목 채종 단계	최저한도(%)		최고한도(%)										
	정립	발아율	수분	이품종	이종종자	잡초종자			피해립	병해립		이물	메성배유개체출현율
						특정해초	기타해초	계		특정병	기타병		
원원종	99.0	85	14.0	0.05	0.06	-	0.03	0.05	2.0	무	5.0	1.0	0.2
원종	99.0	85	14.0	0.10	0.12	-	0.05	0.10	3.0	2.0	10.0	1.0	0.4
보급종	98.0	85	14.0	0.20	0.20	-	0.10	0.20	5.0	4.0	10.0	2.0	0.6

※ 정의

- 기타해초 : 냉이 및 뜯새풀을 말한다.
- 특정병 : 포장검사규격에 준한다.
- 기타병 : 붉은 곰팡이병을 말한다.

다. 밀

1) 포장검사

- 가) 검사시기 및 회수 : 유숙기로부터 황숙기 사이에 1회 실시한다.
- 나) 포장격리 : 벼에 준한다.
- 다) 전작물 조건 : 품종의 순도유지를 위해 2년 이상 윤작을 하여야 한다.
다만, 경종적 방법에 의하여 혼종의 우려가 없도록 담수처리·객토·비닐멀칭을 하였거나, 이전 재배품종이 당해 포장검사를 받는 품종과 동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 라) 포장조건 : 벼에 준한다.
- 마) 검사규격

채종 단계		항목	최저한도(%)		최고한도(%)			작황	
			품종순도	이종 종자주	잡초		병 주		
					특정해초	기타해초	특정병		기타병
원원종포			99.9	0.01	-	-	0.01	10.00	균일
원종포			99.9	0.01	-	-	0.01	15.00	균일
채종포	1세대		99.7	0.05	-	-	0.02	20.00	균일
	2세대		99.0						

※ 정의

- 특정병 : 걸깜부기병 및 비린깜부기병을 말한다.
- 기타병 : 흰가루병, 줄기녹병, 위축병, 즙녹병, 엽고병 및 붉은곰팡이병을 말한다.

2) 종자검사

□ 검사규격

채종 단계		항목		최저한도(%)		최 고 한 도 (%)									
				정립	발아율	수분	이 품종	이종 종자	잡 초 종 자			피해 립	병 해 립		이물
									특정해초	기타해초	계		특정병	기타병	
원원종		99.0	85	12.0	0.05	0.03	-	0.03	0.05	2.0	무	5.0	1.0		
원 종		99.0	85	12.0	0.10	0.06	-	0.05	0.10	3.0	0.1	10.0	1.0		
보급종		98.0	85	12.0	0.20	0.10	-	0.10	0.20	5.0	0.2	10.0	2.0		

※ 정의

- 기타해초 : 걸보리종자 검사규격에 준한다.
- 특정병 : 포장검사규격에 준한다.
- 기타병 : 붉은곰팡이병을 말한다.

라. 콩

1) 포장검사

- 가) 검사시기 및 회수 : 개화기에 1회 실시한다.
- 나) 포장격리 : 벼에 준한다.
- 다) 전작물 조건 : 겉보리에 준한다.
- 라) 포장조건 : 벼에 준한다.
- 마) 검사규격

채종 단계		항목	최저한도(%)		최고한도(%)				작황
			품종 순도	이종 종자주	잡 초		병주		
					특정해초	기타해초	특정병	기타병	
원원종포			99.9	무	무	-	3.00	10.00	균일
원 종 포			99.9	무	무	-	5.00	15.00	균일
채종포	1세대		99.7	0.20	0.01	-	10.00	20.00	균일
	2세대		99.0	0.50					

※ 정의

- 특정해초 : 새삼을 말한다.
- 특정병 : 자주무늬병(자반병)을 말한다.
- 기타병 : 모자이크병, 세균성점무늬병, 불마름병(엽소병), 탄저병 및 노균병을 말한다.

2) 종자검사

□ 검사규격

채종 단계		항목	최저한도(%)		최 고 한 도 (%)									
			정립	발아율	수분	이 품종	이종 종자	잡 초 종 자			피해 립	병 해 립		이물
								특정해초	기타해초	계		특정병	기타 병	
원원종			99.0	85	14.0	0.10	무	무	-	0.01	2.0	3.0	5.0	1.0
원 종			99.0	85	14.0	0.20	무	무	-	0.02	3.0	5.0	10.0	1.0
보급종			98.0	85	14.0	0.50	0.10	무	-	0.05	5.0	5.0	10.0	2.0

※ 정의

- 특정해초 : 포장검사규격에 준한다.
- 특정병 : 포장검사규격에 준한다.
- 기타병 : 모자이크병, 미이라병 및 탄저병을 말한다.

마. 옥수수

1) 교잡종

가) 포장검사

(1) 검사시기 및 회수 : 수술출현 1주일전 · 수술출현기 · 암술출현기 및 수확 1주일 전에 1회씩 실시한다. 다만, 수술출현 1주일 전의 검사와 암술출현기의 검사는 생략할 수 있다.

(2) 포장격리

(가) 원원종, 원종의 자식계통 및 채종용 단교잡종 : 원원종, 원종의 자식계통은 이품종으로부터 300m 이상, 채종용 단교잡종은 200m 이상 격리되어야 한다. 다만, 건물 또는 산림 등의 보호물이 있을 때는 200m 로 단축할 수 있다.

(나) 복교잡종, 삼계교잡종 : 이품종 또는 유사품종으로부터 200m 이상 격리되어야 한다. 다만, 포장주위에 화분이 풍부한 슛옥수수를 심은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그 거리를 단축할 수 있다.

포장규모 포장주위 응주출수	포장규모				
	4ha 미만	4 이상 8ha 미만	8 이상 12ha 미만	12 이상 16ha 미만	16ha 이상
2 줄	200 m	191 m	181 m	171 m	166 m
4	176 m	166 m	156 m	146 m	141 m
6	151 m	141 m	131 m	121 m	116 m
8	126 m	116 m	106 m	96 m	91 m
10	101 m	91 m	80 m	70 m	65 m
12	75 m	65 m	55 m	50 m	50 m
14	50 m	45 m	35 m	20 m	20 m

(다) 종자의 타화수정방지를 위하여 별도의 조치를 취하였거나 품종 간의 개화기가 달라 교잡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포장 격리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 할 수 있다.

(3) 전작물 조건 : 없음

(4) 포장조건 : 비에 준한다.

(5) 검사규격

채종단계	항목	최고한도(%)			작황	
		변형주	자연교잡율	병주		
				특정병		기타병
자식계통	무	무	-	2.00	균일	
단교잡종	0.20	0.50	-	5.00	균일	
삼계교잡종	0.30	0.50	-	5.00	균일	
변형단교잡종						
복교잡종	0.40	1.00	-	5.00	균일	

※ 정의

- 자연교잡율 : 종자친의 미제응비율 및 화분비산기 이후에 제거되어 자연 교잡된 비율을 말한다.
- 기타병 : 매문병, 깨씨무늬병, 감부기병 및 붉은곰팡이병을 말한다. 다만, 생육후기 검사시 우량종자생산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 한하여 매문병과 깨씨 무늬병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종자검사

□ 검사규격

구분	항목	최저한도(%)		최고한도(%)						
		정립	발아율	수분	이품종	이종종자	피해립	병해립		이물
								특정병	기타병	
자식계통	98.0	85	13.0	무	무	5.0	-	2.0	2.0	
교잡종	98.0	85	13.0	무	무	5.0	-	5.0	2.0	

주) 교잡종이 보급종일 경우 이품종 및 이종종자의 최고한도를 0.01%로 한다.

※ 정의

- 기타병 : 포장검사규격에 준한다.

2) 합성품종 방임수분종

가) 포장검사

- (1) 포장검사 및 회수 : 수술출현 초기에 1회, 호숙기에 1회 실시한다.
- (2) 포장격리 : 교잡종에 준한다.
- (3) 전작물 조건 : 교잡종에 준한다.
- (4) 포장조건 : 교잡종에 준한다.
- (5) 검사규격

채종단계	항목	최고한도(%)		작황	
		이품종주	병주		
			특정병		기타병
원원종포	무	-	2.00	균일	
채종포	무	-	5.00	균일	

※ 정의

- 기타병 : 교잡종 검사규격에 준한다.

나) 종자검사

□ 검사규격

채종단계	항목		최 고 한 도 (%)						
	최저한도(%)		수분	이품종	이종종자	피해립	병해립		이물
	정립	발아율					특정병	기타병	
원원종	98.0	85	13.0	무	무	5.0	-	2.0	2.0
보급종	98.0	85	13.0	무	무	5.0	-	5.0	2.0

※ 정의

- 기타병 : 교잡종 검사규격에 준한다.

바. 감자

1) 포장검사

가) 검사시기 및 회수

- (1) 춘작 : 유묘가 15cm 정도 자랐을 때 및 개화기부터 낙화기 사이에 각각 1회 실시한다.
- (2) 추작 : 유묘가 15cm 정도 자랐을 때 및 제1기 검사후 15일경에 각각 1회 실시한다.

나) 포장격리

- (1) 원원종포 : 불합격포장, 비채종포장으로부터 50m 이상 격리되어야 한다.
- (2) 원종포 : 불합격포장, 비채종포장으로부터 20m 이상 격리되어야 한다.
- (3) 채종포 : 비채종포장으로부터 5m이상 격리되어야 한다.
- (4) 십자화과·가지과·장미과·복숭아나무·무궁화나무 기타 숙주로부터 10m 이상 격리되어야 한다.
- (5) 다른 채종단계의 포장으로부터 1m이상 격리되어야 한다.
- (6) 망실재배를 하는 원원종포·원종포 또는 채종포의 경우에는 격리 거리를 1) 내지 5)의 포장격리기준의 10분 1로 단축할 수 있다.

다) 전작물 조건

- (1) 연작하지 아니한 포장이어야 한다. 다만, 연작피해 방지대책을 강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2) 윤부병 발생포장은 2년 이상 윤작하여야 한다.
- (3) 갈썩병 발생포장은 5년간 감자 및 가지과작물을 재배하여서는 아니된다.

라) 포장조건 : 벼에 준한다.

마) 검사규격

항목 채종 단계	최고한도(%)													작황
	이품 종주	이종 종자 주	특정병							기타병				
			모자이크 바이러스	잎말림 바이러스	기타 바이러스	바이 러스 계	갈 죽 병	둘레 썩음 병	풋 마 름 병	흑 지 병	위 조 병	기 타 병	병 해 계	
원원종포	무	무	0.5	0.3	0.2	1.0	무	무	무	0.5	0.5	5.0	6.0	균일
원종포	무	무	1.0	0.5	0.5	2.0	무	무	무	1.0	1.0	6.0	8.0	균일
채종포	무	무	2.0	1.0	1.0	4.0	무	무	무	1.5	1.5	7.0	10.0	균일

※ 정의

- 특정병 : 모자이크바이러스 · 잎말림바이러스 · 기타 바이러스 · 갈죽병 및 둘레썩음병 · 풋마름병을 말한다.
- 기타병 : 흑지병 · 후사리움위조병 · 역병 · 하역병 등을 말한다.

2) 종자검사

□ 검사규격

항목 채종 단계	괴경 중량	최 고 한 도 (%)												
		이품 종	특 정 병				기 타 병	피 해 서				기 형 서	썩 튼 감 자	이 물
			바이 러스	둘레 썩음 병	풋 마 름 병	갈 죽 병		계	동 해	수 분 해	기 타			
원원종	30-330g	무	1.0	무	무	무	1.0	13.0	무	10.0	3.0	0.5	무	0.5
원 종	30-330g	무	2.0	무	무	무	3.0	15.0	무	10.0	5.0	0.8	3.0	0.5
보급종	30-330g	0.01	4.0	무	무	무	5.0	18.0	무	10.0	8.0	1.0	6.0	1.0

- 주) ○ 인공씨감자를 재배하여 생산된 종자 또는 양액재배로 생산된 종자를 씨감자로 사용하는 경우는 괴경중량을 3-50g 으로 할 수 있으며 인공씨감자를 종자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 괴경중량은 0.5g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보급종 괴경중량 중 50~270g 이외는 30~50g, 270~330g으로 각각 구분하여 유통하여야 한다.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종자관리사는 괴경중량 기준 대신에 괴경크기 기준을 정하여 검사할 수 있다.

※ 정의

- 특정병 : 바이러스 · 둘레썩음병 · 풋마름병 · 갈썩병을 말한다.
- 기타병 : 더덩이병 · 흑지병 · 역병 · 무름병 · 마른썩음병 등을 말한다.
다만, 더덩이병은 개체의 병반지름이 5mm 이내이고, 병반지름의 합이 2cm 이하로서 병반면적이 전체표면적의 3% 이내인 것은 제외한다.
- 피해서 : 중심공동서 · 동해 · 일소 · 기계적상해 · 개열서 · 충해 · 수분해 기타 원인에 의하여 손상을 받은 것을 말한다.
- 싹튼감자 : 눈이 5mm 이상 자란 것을 말한다.

사. 고구마

1) 포장검사

- 가) 검사시기 및 회수 : 괴근비대 초기에 1회 검사한다.
- 나) 포장격리 : 벼포장 검사규격에 준한다.
- 다) 전작물 조건 : 감자에 준한다.
- 라) 포장조건 : 벼에 준한다.
- 마) 검사규격

항목 채종단계		최고한도(%)					작황	
		이품종주	이종 종자주	변형주	특정병주			기타병
					흑반병	위축병		
원원종포		무	무	무	0.10	무	0.10	균일
원종포		무	무	무	0.20	무	0.20	균일
채종포	1세대	무	무	무	0.30	무	0.50	균일
	2세대							

※ 정의

- 특정병 : 흑반병 및 마이코프라스마병을 말한다.
- 기타병 : 만할병 및 선충병을 말한다.

2) 종자검사

□ 검사규격

채종단계	항목	괴근중량	최고한도(%)				
			이품중저	병해중저		피해저	싹튼 고구마
				흑반병	기타병중		
원원종		70-400g	무	무	0.1	1.0	1.0
원종		70-400g	무	0.2	0.5	3.0	3.0
보급종		70-400g	무	0.5	1.0	5.0	5.0

※ 정의

- 특정병 : 흑반병을 말한다.
- 기타병 : 선충병 · 만할병 · 연부병 · 자문우병 등 기타병을 말한다.
- 피해저 : 상해저 · 압상저 · 부패저 · 병해저 · 충해저 및 퇴화저를 말한다.
- 싹튼고구마 : 눈이 20mm 이상 자란 것을 말한다.

아. 팔

1) 포장검사

- 가) 검사시기 및 회수 : 개화기에 1회 실시한다.
- 나) 포장격리 : 벼에 준한다.
- 다) 전작물 조건 : 밀에 준한다.
- 라) 포장조건 : 벼에 준한다.
- 마) 검사규격

채종단계	항목	최저한도(%)	최고한도(%)		작황		
			품종순도	이종 종자주		병주	
						특정병	기타병
	원원종포	99.9	무	3.00	10.00	균일	
	원종포	99.9	무	5.00	15.00	균일	
채종포	1세대	99.7	0.10	10.00	20.00	균일	
	2세대	99.0					

※ 정의

- 특정병 : 콩세균병 및 위축병을 말한다.
- 기타병 : 갈반병 · 엽소병 · 탄저병 등 기타병을 말한다.

2) 종자검사

□ 검사규격

채종단계	항목		최고한도(%)							
	최저한도(%)		수분	이품중	이종종자	잡초종자	피해립	병해립		이물
	정립	발아율						특정병	기타병	
원원종	99.0	85	13.0	0.10	무	0.01	2.0	3.0	5.0	1.0
원종	99.0	85	13.0	0.20	무	0.02	3.0	5.0	10.0	1.0
보급종	98.0	85	13.0	0.50	0.10	0.05	5.0	5.0	10.0	2.0

※ 정의

- 특정병 및 기타병 : 포장검사규격에 준한다.

자. 땅콩

1) 포장검사

- 가) 검사시기 및 회수 : 개화초에 1회 실시한다.
- 나) 포장격리 : 벼에 준한다.
- 다) 전작물 조건 : 밀에 준한다.
- 라) 포장조건 : 벼에 준한다.
- 마) 검사규격

채종단계	항목		최고한도(%)				작황	
	최저한도(%)		이종종자주	잡초		병주		
	품종순도			특정해초	기타해초	특정병		기타병
원원종포		99.9	무	-	무	0.20	5.0	균일
원종포		99.9	무	-	무	0.50	10.0	균일
채종포	1세대	99.7	0.3	-	무	1.00	15.0	균일
	2세대	99.0	0.5					

※ 정의

- 특정병 : 갈반병을 말한다.
- 기타병 : 검은무늬병, 균핵병 및 줄기썩음병을 말한다.

2) 종자검사

□ 검사규격

채종 단계	항목		최고한도(%)									
	최저한도(%)		수분	이품 종	이종 종자	잡초종자			피해 립	병해립		이물
	정립	발아율				특정 해초	기타 해초	계		특정병	기타병	
원원종	99.0	85	13.0	0.10	무	-	0.01	0.01	2.0	1.0	2.0	1.0
원종	99.0	85	13.0	0.20	무	-	0.02	0.02	3.0	3.0	5.0	1.0
보급종	98.0	85	13.0	0.50	0.10	-	0.03	0.05	5.0	3.0	10.0	2.0

※ 정의

- 특정병 : 포장검사규격에 준한다.
- 기타병 : 검은무늬병, 균핵병을 말한다.

차. 참깨

1) 포장검사

- 가) 검사시기 및 회수 : 개화기에 1회 실시한다.
- 나) 포장격리 : 이품종으로부터 500m 이상 격리되어야 한다. 다만, 동일 종피색 품종간의 격리거리는 5m 이상으로 하며, 망실재배시에 는 격리거리를 적용하지 아니 한다.
- 다) 전작물 조건 : 채종 당해년도부터 2년 이내에 참깨를 재배하지 아니한 포장
- 라) 포장조건 : 벼에 준한다.
- 마) 검사규격

채종 단계	항목	최저한도(%)		최고한도(%)			작황
		품종순도		이종 종자주	병주		
					특정병	기타병	
	원원종포	99.0		0.1	10.0	15.0	균일
	원종포	98.0		0.1	15.0	20.0	균일
채종포	1세대	97.0		0.1	20.0	30.0	균일
	2세대	95.0					

※ 정의

- 특정병 : 역병 및 위조병을 말한다.
- 기타병 : 엽고병 등을 말한다.

2) 종자검사

□ 검사규격

채종단계	항목		최저한도(%)							
	정립	발아율	수분	이품종	이종종자	잡초종자	피해립	병해립		이물
								특정병	기타병	
원원종	99.0	90	10.0	3.0	0.1	0.2	2.0	3.0	5.0	1.0
원종	98.0	85	10.0	5.0	0.1	0.4	3.0	5.0	10.0	1.0
보급종	97.0	85	10.0	7.0	0.1	0.5	5.0	10.0	20.0	2.0

※ 정의

- 특정병과 기타병 : 포장검사규격에 준한다.

카. 들깨

1) 포장검사

- 가) 검사시기 및 회수 : 개화기에 1회 실시한다.
- 나) 포장격리 : 이품종으로부터 5m 이상 격리되어야 한다.
- 다) 전작물 조건 : 밀에 준한다.
- 라) 포장조건 : 벼에 준한다.
- 마) 검사규격

채종단계	항목	최저한도(%)		최고한도(%)		작황
		품종순도	이종종자주	병주		
				특정병	기타병	
원원종포		99.0	0.1	10.0	15.0	균일
원종포		98.0	0.1	15.0	20.0	균일
채종포	1세대	97.0	0.1	20.0	30.0	균일
	2세대	95.0				

※ 정의

- 특정병 : 녹병을 말한다.
- 기타병 : 줄기마름병 등을 말한다.

2) 종자검사

□ 검사규격

채종 단계	항목		최저한도(%)							
			최고한도(%)							
	정립	발아율	수분	이품종	이종 종자	잡초 종자	피해립	병 해 립		이물
							특정병	기타병		
원원종	99.0	85	10.0	3.0	0.1	0.2	2.0	3.0	5.0	1.0
원종	98.0	85	10.0	5.0	0.1	0.4	3.0	5.0	10.0	1.0
보급종	97.0	85	10.0	7.0	0.1	0.5	5.0	10.0	20.0	2.0

※ 정의

- 특정병과 기타병 : 포장검사규격에 준한다.

타. 유채

1) 포장검사

가) 검사시기 및 회수 : 추대기에 1회 실시한다.

나) 포장격리

- 원원종은 망실재배를 원칙으로 하며, 이때 격리거리는 필요없다.
- 원종, 보급종은 이품종으로부터 1,000m 이상 격리되어야 한다.
다만, 산림 등 보호물이 있을 때에는 500m 까지 단축할 수 있다.

다) 전작물 조건 : 밭에 준한다.

라) 포장조건 : 벼에 준한다.

마) 검사규격

항목 채종단계		최저한도(%)		최고한도(%)				작황	
		품종순도		이종 종자주	잡초		병주		
					특정해초	기타해초	특정병		기타병
원원종포		99.9		무	무	-	1.0	2.0	균일
원종포		99.9		무	무	-	5.0	5.0	균일
채종포	1세대	99.7		무	무	-	10.0	10.0	균일
	2세대	99.0							

※ 정의

- 특정해초 : 십자화과 잡초를 말한다.
- 특정병 : 균핵병을 말한다.
- 기타병 : 백수병, 근부병, 공동병을 말한다.

2) 종자검사

□ 검사규격

항목 채종 단계		최저한도(%)			최고한도(%)								
		정립	발아율	수분	이품 종	이종 종자	잡초종자			피해 립	병해립		이물
							특정 해초	기타 해초	계		특정 병	기타 병	
원원종		99.0	85	10.0	0.2	무	무	0.1	0.1	2.0	0.1	2.0	1.0
원 종		99.0	85	10.0	0.5	무	무	0.2	0.2	3.0	0.2	4.0	1.0
보급종		98.0	85	10.0	1.0	0.10	무	0.5	0.5	4.0	0.3	6.0	2.0

※ 정의

- 특정해초 : 포장검사규격에 준한다.
- 특정병 : 포장검사규격에 준한다.
- 기타병 : 포장검사규격에 준한다.

파. 녹두

1) 포장검사

- 가) 검사시기 및 회수 : 개화기에 1회 실시한다.
- 나) 포장격리 : 벼에 준한다.
- 다) 전작물 조건 : 밀에 준한다.
- 라) 포장조건 : 벼에 준한다.
- 마) 검사규격

항 목		최저한도(%)	최 고 한 도 (%)				작황	
			품종순도	이 종 종자주	잡 초			병 주
채종 단계					특정해초	기타해초	특정병	기타병
			원원종포		99.9	무	무	-
원 종 포		99.9	무	무	-	5.0	15.0	균일
채종포	1세대	99.7	0.50	무	-	10.0	20.0	균일
	2세대	99.0						

※ 정의

- 특정해초 : 새삼을 말한다.
- 특정병 : 녹두 황색모자이크바이러스병을 말한다
- 기타병 : 녹두 모틀바이러스병, 갈반병, 흰가루병을 말한다.

2) 종자검사

□ 검사규격

항목		최저한도(%)			최 고 한 도 (%)							
		정립	발아율	수분	이품 중	이종 종자	잡초종자		피해 립	병해립		이물
특정 해초	계						특정 병	기타 병				
원원종		99.0	85	13.0	0.10	무	무	0.01	2.0	3.0	5.0	1.0
원 종		99.0	85	13.0	0.20	무	무	0.02	3.0	5.0	10.0	1.0
보급종		98.0	85	13.0	0.50	0.10	무	0.05	5.0	5.0	10.0	2.0

※ 정의

- 특정해초 : 포장검사규격에 준한다.
- 기타병 : 갈반병 등을 말한다.
- 특정병 : 포장검사규격에 준한다.

하. 채소작물

1) 포장검사

가) 검사시기 및 회수 : 개화기에 1회 이상 실시한다.

나) 포장격리 : 종자작물은 다른 꽃가루 및 종자전염병(종자바이러스 감염 및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야생식물 포함)의 모든 원천으로부터 격리되어야 한다. 작물별 격리거리는 다음 이상이어야 한다.

작물명	격리거리(m)	포장 내지 식물로부터 격리되어야 하는 것
무	1,000	① ②
배추	1,000	① ②
양배추	1,000	① ②
고추	500	① ②
토마토	300	① ②
오이	1,000	① ②
참외	1,000	① ②
수박	1,000	① ②
호박(박)	1,000	① ②
과	1,000	① ②
양과	1,000	① ② ③
당근	1,000	① ②
상추	60	① ②
시금치	1,000	① ②

(주) ① 같은 종의 다른 품종

② 바람이나 곤충에 의해 전파된 치명적인 특정병 또는 기타병에 감염된 같은 작물이나 다른 숙주식물

③ 교잡양과 양친계통 : ① ②로부터 1,600m

위의 격리거리 요건은 다른 종자작물과 종자포장에서 같은 시기에 개화하는 채소 생산작물에 적용된다. 종자포장내지 단지가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방어물로 불필요한 화분립원과 종자전파성 질병을 충분히 방어할 수 있고 다른 작물에 의한 수분이 불가능 할 때는 무시한다.

(예, " 온실재배, 교배모본에 인위적 교배장치를 한 재배 " 등)

다) 전작물 조건 : 전에 재배하였던 작물과 동일종의 작물을 재배하려는 경우에는 최소한 전작물과 2년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다만, 연작 피해 대책을 강구하고 동일 품종을 재배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라) 포장조건 : 벼에 준한다. 다만, 기타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종자생산용 포장 또는 온실은 다음 사항에 의한 종자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생식물이 없어야 한다.

(가) 작물종자로부터 제거하기 어려운 종자

(나) 타가수분

(다) 자생식물로부터 전파되는 종자전염병

(2) 앞작물 재배는 현존하는 토양전염병이 수확된 종자에서 전파될 수 있는 위험을 가능한 한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되어야 한다.

(3) 앞작물로 인하여 포장 또는 온실이 상기 이유 등으로 부적합할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마) 포장검사 규격

작물명	최저한도(%)		최고한도(%)			작황
	순도		이 종 자 주	특 정 해 초	병 주	
	F1양친	교잡종				
무, 양배추, 파, 양파, 상추	99.0	98.0	0.05	0.05	2.0	균일
배추, 토마토, 당근, 시금치	99.0	98.0	0.05	0.05	5.0	균일
고추	99.0	98.0	0.05	0.05	8.0	균일
오이, 참외, 수박	99.0	98.0	0.05	0.05	10.0	균일
호박(박)	99.0	98.0	0.05	0.05	15.0	균일

※ 특정해초의 정의 : 해당작물의 야생종, 화분, 오염성 잡초 및 새삼과 작물을 말한다.

2) 종자검사

가) 검사규격

작물명		최저한도(%)		최고한도(%)						
		정립	발아율	수분	이중종자	잡초종자	이물	손상립	병해립	
									특정병	기타병
무	원종	99.0	70	9.0	0.05	0.05	1.0	7.0		6.0
	보급종	96.0	70	9.0	0.20	0.10	4.0	7.0		6.0
배추	원종	99.0	75	9.0	0.05	0.05	1.0	10.0		7.0
	보급종	96.0	75	9.0	0.20	0.10	4.0	10.0		7.0
양배추	원종	99.0	75	9.0	0.05	0.05	1.0	10.0		6.0
	보급종	96.0	75	9.0	0.20	0.10	4.0	10.0		6.0
고추	원종	99.0	65	9.0	0.05	0.05	1.0	5.0		5.0
	보급종	96.0	65	9.0	0.20	0.10	4.0	5.0		5.0
토마토	원종	99.0	70	9.0	0.05	0.05	1.0	3.0		6.0
	보급종	96.0	70	9.0	0.20	0.10	4.0	3.0		6.0
오이	원종	99.0	80	9.0	0.05	0.05	1.0	5.0	무	5.0
	보급종	96.0	80	9.0	0.20	0.10	4.0	5.0	무	5.0
참외	원종	99.0	75	9.0	0.05	0.05	1.0	5.0	무	7.0
	보급종	96.0	75	9.0	0.20	0.10	4.0	5.0	무	7.0
수박	원종	99.0	75	9.0	0.05	0.05	1.0	5.0	무	6.0
	보급종	96.0	75	9.0	0.20	0.10	4.0	5.0	무	6.0
호박(박)	원종	99.0	75	9.0	0.05	0.05	1.0	7.0	무	10.0
	보급종	96.0	75	9.0	0.20	0.10	4.0	7.0	무	10.0
파	원종	99.0	65	9.0	0.05	0.05	1.0	5.0		4.0
	보급종	96.0	65	9.0	0.20	0.10	4.0	5.0		4.0
양파	원종	99.0	75	9.0	0.05	0.05	1.0	5.0		4.0
	보급종	96.0	75	9.0	0.20	0.10	4.0	5.0		4.0
당근	원종	99.0	65	9.0	0.05	0.05	1.0	3.0		7.0
	보급종	96.0	65	9.0	0.20	0.10	4.0	3.0		7.0
상추	원종	99.0	75	9.0	0.05	0.05	1.0	10.0		5.0
	보급종	96.0	75	9.0	0.20	0.10	4.0	10.0		5.0
시금치	원종	99.0	65	9.0	0.05	0.05	1.0	3.0		6.0
	보급종	96.0	65	9.0	0.20	0.10	4.0	3.0		6.0

※ 정의

- 손상립 : 발아립, 부패립, 충해립 등 물리적 피해립을 말한다.
- 특정병 : 오이녹반모자이크바이러스(CGMMV)를 말한다.
- 기타병 : CGMMV 이외의 병을 말한다.
- 잡초종자 : 모든 잡초 종자를 말한다.

거. 목초종자

1) 포장검사

가) 검사시기 및 회수 : 개화기에 1회 이상 실시한다.

나) 격리거리

작 물 명	구 분	2ha미만 포장(m)	2ha이상 포장(m)
화분과 및 콩과	원원종, 원종	200	100
	보급종	100	50

다) 전작물 조건 : 밀에 준한다.

라) 포장조건 : 벼에 준한다.

마) 작황 : 균일

바) 검사규격

구분	작물명	최저한도(%)		최고한도(%)			
		품종순도		이종종자주		잡초종자주	
		원원종 원종	보급종	원원종 원종	보급종	원원종 원종	보급종
화분과	티머시	99.0	98.0	0.05	0.20	0.05	0.10
	레드톱	99.0	98.0	0.05	0.20	0.05	0.10
	톨웨스큐	99.0	98.0	0.05	0.20	0.05	0.10
	메도우 웨스큐	99.0	98.0	0.05	0.20	0.05	0.10
	오차드 그라스	98.0	97.0	0.05	0.20	0.05	0.10
	페러니얼 라이그라스	99.0	98.0	0.05	0.20	0.05	0.10
	리드카나리 그라스	99.0	98.0	0.05	0.20	0.05	0.10
	브롬 그라스	98.0	97.0	0.05	0.20	0.05	0.10
	켄터키 블루그라스	99.0	98.0	0.05	0.20	0.05	0.10
콩과	알팔파	99.0	98.0	0.05	0.20	0.05	0.10
	버어즈 풋트레포일	99.0	98.0	0.05	0.20	0.05	0.10
	화이트 크로바	99.0	98.0	0.05	0.20	0.05	0.10
	레드 크로바	99.0	98.0	0.05	0.20	0.05	0.10
	엘사이크 크로바	99.0	98.0	0.05	0.20	0.05	0.10

2) 종자검사

□ 검사규격

작물명		최저한도(%)			최고한도(%)						
		정립		발아율	수분	이종종자		이물		잡초종자	
		원원종 원종	보급 종			원원종 원종	보급 종	원원종 원종	보급 종	원원종 원종	보급 종
화 본 과	티머시	98.0	97.0	85	14.0	0.05	0.20	2.0	3.0	0.05	0.10
	레드 톱	98.0	97.0	80	14.0	0.05	0.20	2.0	3.0	0.05	0.10
	톨 웨스큐	98.0	97.0	85	14.0	0.05	0.20	2.0	3.0	0.05	0.10
	메도우웨스큐	98.0	97.0	80	14.0	0.05	0.20	2.0	3.0	0.05	0.10
	오차드그라스	95.0	92.0	85	14.0	0.05	0.20	5.0	8.0	0.05	0.10
	페러니얼 라이그라스	98.0	97.0	80	14.0	0.05	0.20	2.0	3.0	0.05	0.10
	리드카나리 그라스	98.0	97.0	75	14.0	0.05	0.20	2.0	3.0	0.05	0.10
	브롬 그라스	92.0	90.0	80	14.0	0.05	0.20	8.0	10.0	0.05	0.10
	켄터키블루 그라스	98.0	97.0	80	14.0	0.05	0.20	2.0	3.0	0.05	0.10
콩 과	알팔파	98.0	98.0	80	14.0	0.05	0.20	2.0	2.0	0.05	0.10
	버어즈 풋트레포일	98.0	98.0	80	14.0	0.05	0.20	2.0	2.0	0.05	0.10
	화이트 크로바	98.0	98.0	85	14.0	0.05	0.20	2.0	2.0	0.05	0.10
	레드 크로바	98.0	98.0	85	14.0	0.05	0.20	2.0	2.0	0.05	0.10
	엘사이크 크로바	98.0	98.0	85	14.0	0.05	0.20	2.0	2.0	0.05	0.10

너. 사료 및 녹비작물종자

1) 포장검사

가) 검사시기 및 회수 : 벼, 보리, 옥수수, 밀은 일반재배용 종자에 준하고 그 외의 종자는 개화기에 1회 이상 실시한다.

나) 포장격리 : 벼에 준한다. (다만, 수단그라스와 이탈리아인 라이그라스, 헤어리베치는 목초 종자에 준하고 호밀의 원원종, 원종은 300m, 보급종은 250m이상 격리되어야 한다.)

다) 전작물 조건 : 밀에 준한다. 다만, 벼, 보리, 옥수수는 일반재배용 종자에 준한다.

라) 포장조건 : 벼에 준한다.

마) 작황 : 균일

바) 포장검사 규격

작물명	최저한도(%)		최고한도(%)			
	품종순도		이종종자주		잡초종자주	
	원원종 원종	보급종	원원종 원종	보급종	원원종 원종	보급종
옥수수	99.5	99.0	0.05	0.20	0.05	0.10
벼	99.5	99.0	0.05	0.20	0.05	0.10
보리	99.5	99.0	0.05	0.20	0.05	0.10
밀	99.5	99.0	0.05	0.20	0.05	0.10
수수	99.5	99.0	0.05	0.20	0.05	0.10
호밀	99.5	99.0	0.05	0.20	0.05	0.10
라이밀(트리티케일)	99.5	99.0	0.05	0.20	0.05	0.10
귀리	99.5	99.0	0.05	0.20	0.05	0.10
수단그라스	99.5	99.0	0.05	0.20	0.05	0.10
이탈리안라이그라스	99.5	99.0	0.05	0.20	0.05	0.10
헤어리베치	97.0	94.0	0.05	0.20	0.05	0.10

2) 종자검사 규격

작물명	최저한도(%)			최고한도(%)						
	정립		발아 율	수분	이종종자		이물		잡초종자	
	원원종 원종	보급종			원원종 원종	보급종	원원종 원종	보급종	원원종 원종	보급종
옥수수	98.0	98.0	85	14.0	0.05	0.20	2.0	2.0	-	-
벼	99.0	98.0	80	"	0.05	0.20	1.0	2.0	0.05	0.20
보리	99.0	98.0	80	"	0.05	0.20	1.0	2.0	0.10	0.10
밀	99.0	98.0	80	12.0	0.06	0.20	1.0	2.0	0.10	0.10
수수	99.0	98.0	80	14.0	0.05	0.20	1.0	2.0	0.05	0.10
호밀	99.0	98.0	80	"	0.05	0.20	1.0	2.0	0.05	0.10
라이밀 (트리티케일)	99.0	98.0	80	"	0.05	0.20	1.0	2.0	0.05	0.10
귀리	99.0	98.0	80	"	0.05	0.20	1.0	2.0	0.05	0.10
수단그라스	99.0	98.0	85	"	0.05	0.20	1.0	2.0	0.05	0.10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99.0	98.0	85	"	0.05	0.20	1.0	2.0	0.05	0.10
헤어리베치	99.0	98.0	80	14	0.05	0.20	1.0	2.0	0.05	0.10

※ 보리의 이품종 최고한도(%)는 원원종·원종 3.0%, 보급종 6.0%로 한다. 다만, 이품종은 걸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중 어느 한 품목이 섞인 것을 말한다.

더. 화훼 구근류

1) 포장검사

가) 검사시기 및 회수 : 정식후 묘가 20cm 정도 자랐을 때(튤립, 글라디올러스는 30cm)와 개화기 때 각 1회 실시한다.

나) 포장격리 : 불합격 포장, 다른 구근류 재배포장으로부터 20m 이상 격리되어야 한다. 다만, 망실재배를 하는 포장의 경우에는 10분의 1로 단축할 수 있다.

다) 전작물 조건 : 글라디올러스, 구근아이리스, 튤립은 2년 이상 윤작하여야 하며 나리, 프리지아는 3년 이상 윤작하여야 한다. 단, 연작피해 방지대책을 강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포장조건

(1) 뿌리응애 및 구근부패병 발생이 없었던 포장이어야 한다.

(2) 조사하기가 곤란할 정도로 잡초발생이 있거나 작물이 훼손되어서는 아니 된다.

마) 검사규격

작물명	구분	최저한도(%)		최고한도(%)				
		맹아율	이품종주	블라스팅 및 블라인드	특정병			
					바이러스	잎마름병	목썩음병	갈색반점병
나리		85	무	-	2.0	0.5	-	-
글라디올러스		85	무	-	2.0	-	무	-
프리지아		85	무	-	2.0	-	2.0	-
구근아이리스		85	무	-	1.0	-	-	-
튤립		85	-	-	2.0	-	-	2.0

작물명 \ 구분	최고한도(%)							작황
	기타 병해충							
	진딧물	총채벌레	마늘줄기선충	역병	젓빛곰팡이병	균핵병	반점세균병	
나리	0.1	-	0.5	0.5	-	-	-	균일
글라디올러스	0.1	0.5	-	-	0.5	-	-	균일
프리지아	1.0	-	-	-	2.0	2.0	-	균일
구근아이리스	0.1	-	-	-	-	-	0.5	균일
튤립	1.0	-	-	-	-	-	-	균일

※ 정의

- 블라스팅 및 블라인드 : 동일한 규격의 구근을 심어도 꽃봉오리가 발생하지 않거나 조기에 고사한 것을 말한다.
- 특정병 : 바이러스병, 잎마름병(*Botrytis elliptica*), 목썩음병(*Buikholderia gladioli*), 갈색반점병(*Botrytis tulipae*)을 말한다.

<바이러스병>

- LSV : lily symptomless virus,
- CMV : cucumber mosaic virus,
- BYMV : bean yellow mosaic virus
- FMV : freesia mosaic virus
- TuMV : turnip mosaic virus
- IMMV : iris mild mosaic virus
- TBV : tulip breaking virus

- 기타병해충 : 목화진딧물(*Aphis gossypii*), 총채벌레(*Thrips simplex*), 마늘줄기선충(*Ditylenchus dipsaci*), 역병(*Phytophthora* sp.), 젓빛곰팡이병(*Botrytis gladiatorum*), 균핵병(*Sclerotinia* sp.), 반점세균병(*Pseudomonas iridicola*)을 말한다.

2) 종자검사

□ 검사규격

작물명	구분	최저한도(%)		최고한도(%)					
		구근상태		구근상태		특정병			
		건전외피	밑뿌리충실도	썩 또는 발근	블라스팅 및 블라인드	바이러스	뿌리썩음병	목썩음병	갈색반점병
나리		90	90	5.0	-	2.0	1.0	-	-
글라디올러스		90	-	3.0	-	2.0	-	5.0	-
프리지아		90	-	3.0	-	2.0	-	2.0	-
구근아이리스		90	-	5.0	-	1.0	-	-	-
튤립		90	-	0.0	-	2.0	-	-	2.0

작물명	구분	최고한도(%)					
		기타병					
		줄기썩음병	역병	마늘줄기선충	감자썩이선충	균핵병	잿빛곰팡이병
나리		5.0	5.0	5.0	-	-	-
글라디올러스		-	-	5.0	5.0	-	-
프리지아		-	-	-	-	-	5.0
구근아이리스		-	-	-	-	-	5.0
튤립		-	-	-	-	-	-

※ 정의

- 건전외피 : 비늘잎(인편, 나리)이나 구근외피에 상처가 없고, 얼거나 마르지 않으며 고유의 색을 나타낼 것
- 썩 또는 발근
 - 나리 : 저장 중에는 없고, 정식 직전에는 5cm 이하이어야 한다.
 - 글라디올러스 : 저장 중에는 없고, 정식 직전에는 2cm 이하이어야 한다.

- 밀뿌리 충실도 : 밀뿌리(하근)는 싱싱하게 살아 있어야 하고, 4개 이상 많을수록 좋은 것을 말한다.
- 블라스팅 및 블라인드 : 동일한 규격의 구근을 심어도 꽃봉오리가 발생하지 않거나 조기에 고사한 것을 말한다.
- 특정병해충 : 바이러스(LSV, CMV, FMV, BYMV, TuMV, IMMV, TBV) 뿌리썩음병(*Pseudomonas cichori*), 목썩음병, 갈색반점병을 말한다.
- 기타 병해충 : 줄기썩음병(*Rhizoctonia solani*), 역병, 마늘줄기선충, 감자썩이선충(*Ditylenchus destructor*), 균핵병, 잿빛곰팡이병(*Botrytis sp.*)을 말한다.

러. 버섯종균

종류 \ 항목	최고한도(%)			
	세균오염	진균오염	병징바이러스 보유	이품종 혼입
원균	무	무	무	무
접종원	무	무	무	무
종균	0.1	0.1	무	무

※ 정의

- 병징 바이러스 보유 : 병징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종류를 보유하는 것을 말한다.
 - 대부분의 곰팡이 바이러스(mycovirus)는 버섯에서 병징을 유발하지 않으나 일부 특수 종류의 바이러스가 병징을 가지므로 공식적으로 병징이 확인된 바이러스만 해당된다.

머. 과수

1) 포장검사

- 가) 검사시기 및 회수 : 생육기에 1회 실시하며, 품종의 순도·진위성·무병성 등의 확인을 위해 필요할 경우 추가 검사한다. 다만, 과수 바이러스·바이로이드 검사는 3개 시기(4~6월, 7~9월, 10~익년

2월) 중 선택하여 2회 이상 실시한다.

나) 포장격리

- (1) 무병 묘목인지 확인되지 않은 과수와 최소 5m 이상 격리되어 근계의 접촉이 없어야 한다.
- (2) 다른 품종들과 섞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한 열에는 한 품종만 재식한다.

다) 전작물 조건 : 핵과류, 장과류, 감귤은 다른 과수작물에 비해 연작 피해발생이 쉬우므로 동일포장에서 위 과종을 양묘할 때는 최소한 1년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다만, 연작피해 방지를 위하여 충분한 처리를 하고 재배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라) 포장조건

- (1) 토양소독 등을 통하여 토양선충 등 토양에 의한 오염원이 제거된 포장에서 건전한 생육이 담보되는 관리(시비, 관수, 배수, 잡초방제 등)가 이루어져야 한다.
- (2) 생육기간 동안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병과 해충의 피해가 있는 식물체는 제거되거나 소독·방제되어야 한다.

※ 주요 병해충 종류

○ 사과

- 병 : 흰가루병, 점무늬낙엽병, 겹무늬썩음병, 갈색무늬병
- 해충 : 응애, 진딧물, 잎말이나방, 굴나방

○ 배

- 병 : 붉은별무늬병, 검은별무늬병, 흰가루병, 배나무잎검은점병
- 해충 : 응애, 진딧물, 꼬마배나무이, 복숭아순나방, 잎말이나방, 깍지벌레

○ 복숭아

- 병 : 잎오갈병, 세균성구멍병, 탄저병, 잿빛무늬병
- 해충 : 진딧물, 복숭아 굴나방, 복숭아 순나방

○ 포도

- 병 : 탄저병, 새눈무늬병, 흰가루병, 노균병, 갈색무늬병

- 해충 : 포도유리나방, 포도호랑하늘소, 박쥐나방
 - 감 꺾임
 - 병 : 검은점무늬병, 더덩이병, 잿빛곰팡이병
 - 해충 : 굴응애, 깍지벌레, 진딧물, 굴나방, 총채벌레
 - 감
 - 병 : 등근무늬낙엽병, 탄저병, 흰가루병
 - 해충 : 잎말이나방, 노린재류, 썩어나방
 - 자두
 - 병 : 잿빛무늬병, 세균성구멍병
 - 해충 : 응애, 진딧물, 깍지벌레, 복숭아유리나방
 - 참다래
 - 병 : 궤양병, 줄기썩음병
 - 해충 : 뽕나무깍지벌레
- ※ 과수화상병 등 식물방역법령에 따른 금지병해충이 발생하는 경우 관계기관에 신고하고 그 조치에 따라 처리한다.

(3) 포장마다 재식상태를 알 수 있는 재식도가 있어야 하며, 재식열별로 품종명을 알 수 있는 라벨을 설치한다.

마) 검사규격

생산단계	항목	최고한도(%)			
		이품종주	이종주	병주	
				특정병	기타병
원원종포	무	무	무	2.0	
원종포	무	무	무	2.0	
모수포	무	무	무	6.0	
증식포	1.0	무	무	10.0	

<특정병>

- 사과
 - ACLSV(Apple chlorotic leaf spot virus)
 - ASGV(Apple stem grooving virus)
 - ASPV(Apple stem pitting virus)
 - ApMV(Apple mosaic virus)
 - ASSVd(Apple scar skin viroid)
- 배
 - ACLSV(Apple chlorotic leaf spot virus),
 - ASGV(Apple stem grooving virus)
 - ASSVd(Apple scar skin viroid)
- 복숭아
 - ACLSV(Apple chlorotic leaf spot virus)
 - HSVd(Hop stunt viroid)
- 포도
 - GLRaV-1(Grapevine leafroll associated virus-1)
 - GLRaV-3 (Grapevine leafroll associated virus-3)
 - GFkV(Grapevine fleck virus)
- 감귤
 - CTLV(Citrus tatter leaf virus)
 - CTV(Citrus tristeza virus)
 - SDV(Satusma dwarf virus)
 - CiMV(Citrus mosaic virus)

※ 기타병은 사과·배·복숭아·감의 경우 근두암종병(뿌리혹병)을 포도는 근두암종병(뿌리혹병)·뿌리혹선충(필록세라)을 감귤은 궤양병을 참다래는 역병을 말한다.

※ 특정병(바이러스·바이로이드)에 대한 검사는 선택하여 실시(보증항목에서 제외)할 수 있다.

2) 종자(묘목)검사

가) 검사시기 : 판매 전까지 1회 실시한다. 다만, 과수 바이러스·바이로이드 검사는 3개 시기(4~6월, 7~9월, 10~익년 2월) 중 선택하여 2회 이상 실시한다.

나) <삭제 2009.6.>

다) 외형적 기준은 별표 14의 규격묘의 규격기준을 따른다. 다만 육안으로 보았을 때 과수화상병 등 식물방역법령에 따른 금지병해충이 발생하는 경우 관계기관에 신고하고 그 조치에 따라 처리한다.

라) 대목·접수 및 묘목 등은 계통 관리되어 어떤 원원종 또는 원종에서 유래되었는지 알 수 있어야 한다.

마) 묘목의 굴취는 잎이 떨어진 이후에 시작하여 다음해 잎눈 발아 전 까지 할 수 있다.

바) 검사규격

구 분	최고한도(%)				최저한도(%)
	이품종주	이종주	병주		뿌리 충실도
			특정병	기타병	
원원종	무	무	무	1.0	95.0
원종	무	무	무	1.0	95.0
모수	무	무	무	3.0	93.0
보급종	0.5	무	무	5.0	90.0

※ 특정병: 포장검사 규격에 준한다.

※ 기타병: 포장검사 규격에 준한다.

※ 뿌리충실도 : 뿌리가 싱싱하게 살아 있고 적당히 발근되어 충실히 근계가 형성되어 있으며, 적당한 길이를 유지한 상태로 굴취되었고, 기계적, 화학적, 기상재해에 의한 피해를 입지 않은 정도를 말한다.

- 사과(자근 및 이종접목묘 포함) : [결뿌리 10개 이상 + 뿌리털 70개 이상을 포함한 묘목수]/전체주수×100]

- 배, 감 : [(건전한 원뿌리 1개 이상 + 결뿌리 3개 이상 + 뿌리털 30개 이상을 포함한 묘목수)/전체주수×100]

- 핵과류 : [(건전한 원뿌리 1개 이상 + 결뿌리 20개 이상 + 뿌리털 100개 이상을 포함한 묘목수)/전체주수×100]

- 포도, 참다래(접목 및 삼목묘 포함) : [(결뿌리 15개 이상 + 뿌리털 70개

이상을 포함한 묘목수)/전체주수×100]

- 감귤 : [(건전한 원뿌리 1개 이상 + 곁뿌리 15개 이상 + 뿌리털 100개 이상을 포함한 묘목수)/전체주수×100]

3) 과수 무병원종의 분양 및 관리

가) 농촌진흥청장은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기관에 무병원종을 분양할 수 있다.

- 격리망실 등 외부 병해충을 차단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어 분양받은 무병원종의 보존 및 관리가 가능해야 한다.
- 엘라이자(ELISA), PCR 등 바이러스 검정 장비와 전문 검사인력을 갖추고 있어 지속적인 바이러스 검사가 가능해야 한다.
- 분양받은 무병원종은 무병묘목의 생산 등에 사용되어야 하며, 생산된 묘목에 대하여 보증이 가능하여야 한다.

나) 무병원종을 보존하고 있는 기관은 3년 주기로 보존중인 무병원종에 대하여 국립종자원장으로부터 바이러스 감염여부에 대하여 전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단, 무병원종 보존 기관이 자체검사를 한 경우 검사의 적절성을 국립종자원장이 판단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버. 뽕나무

1) 포장검사

가) 검사시기 및 회수 : 생육기에 1회 실시하며, 품종의 순도·진위성·무병성 등의 확인을 위해 필요할 경우 추가 검사한다.

나) 포장격리

- (1) 무병 묘목인지 확인되지 않은 뽕밭과 최소 5m 이상 격리되어 근계의 접촉이 없어야 한다.
- (2) 다른 품종들과 섞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한 열에는 한 품종만 재식한다.

다) 전작물 조건 : 동일포장에서 위 과종을 양묘할 때는 최소한 1년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다만, 연작피해 방지를 위하여 충분한 처리를 하고 재배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라) 포장조건

- (1) 토양소독 등을 통하여 토양선충 등 토양에 의한 오염원이 제거된 포장에서 건전한 생육이 담보되는 관리(시비, 관수, 배수, 잡초방제 등)가 이루어져야 한다.
- (2) 생육기간 동안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병과 해충의 피해가 있는 식물체는 제거되거나 소독·방제되어야 한다.

※ 주요 병해충 종류

- 병 : 자주빛 날개무늬병, 흰빛 날개무늬병, 오갈병
- 해충 : 뿌리혹 선충, 깍지벌레

- (3) 포장마다 재식상태를 알 수 있는 재식도가 있어야 하며, 재식열별로 품종명을 알 수 있는 라벨을 설치한다.

마) 검사규격

생산단계	최고한도(%)			
	이품종주	이종주	특정병주	
			오갈병주	기타
원종포	무	무	무	2.0
모수포	무	무	무	6.0
증식포	1.0	무	무	10.0

※ 원종포 : 원종이 보존되어 있는 격리망실 내의 포장을 말한다.

※ 이품종주 : 다른 품종 / 원품종 × 100

2) 종자(묘목)검사

가) 검사시기 : 굴취 후 판매 전까지 1회 실시한다.

나) 외형적 기준은 별표 14의 규격묘의 규격기준을 따른다.

다) 대목·접수 및 묘목 등은 계통 관리되어 어떤 원원종 또는 원종에서 유래되었는지 알 수 있어야 한다.

라) 묘목의 굴취는 잎이 떨어진 이후에 시작하여 다음해 잎눈 발아 전까지 할 수 있다.

마) 검사규격

구분	최고한도(%)				최저한도(%)
	이품종주	이종주	특정병주		
			오갈병	기타	뿌리 충실도
원원종	무	무	무	1.0	95.0
원종	무	무	무	3.0	93.0
보급종	1.0	무	무	5.0	90.0

- ※ 기타병은 자주빛 날개무늬병, 흰빛 날개무늬병, 줄기마름병, 눈마름병을 말한다.
- ※ 뿌리충실도 : 뿌리가 싱싱하게 살아 있고 적당히 발근되어 충실히 근계가 형성되어 있으며, 원뿌리 20cm 이상의 길이를 유지한 상태로 굴취되었고, 기계적, 화학적, 기상재해에 의한 피해를 입지 않은 정도를 말한다.
- [(건전한 원뿌리 1개이상 + 곁뿌리 5개 이상 + 뿌리털 100개 이상을 포함한 묘목수)/전체주수 X 100]

3) 뽕나무 무병원종의 분양 및 관리

- 가) 농촌진흥청장은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기관에 무병원종을 분양할 수 있다.
 - 격리망실 등 외부 병해충을 차단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어 분양받은 무병원종의 보존 및 관리가 가능해야 한다.
 - 분양받은 무병원종은 무병묘목의 생산 등에 사용되어야 하며, 생산된 묘목에 대하여 보증이 가능하여야 한다.
- 나) 무병원종을 보존하고 있는 기관은 5년 주기로 보존중인 무병원종에 대하여 국립종자원장으로부터 오갈병 감염여부에 대하여 전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단, 무병원종 보존 기관이 자체검사를 한 경우 검사의 적절성을 국립종자원장이 판단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버. 기타 작물류

상기에 포함되지 않는 작물에 대하여는 OECD의 보증제도와 ISTA의 종자검사 방법에 따른다.

- 3. 기타 검사기준 및 세부적인 검사방법은 검사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포장의 종류 및 포장단위(제13조 관련)

1. 포장의 종류

가. 포장재

마대·지대·망대·합성수지대·비닐대상자(프라스틱·골판지 또는 목재) 또는 캔(Can) 등으로서 탈루의 우려가 없는 새 것으로 한다. 다만, 농산물 수송용기(컨테이너 등)는 완전히 세척하여 재사용할 수 있으며, 대형백(bag)은 외부에 해당 품종명을 명기하고 해당 품종에만 재사용할 수 있고 재가공 판매를 위한 매입용기는 해당 품종에만 재사용할 수 있다

나. 방법

- 1) 마대·지대·망대 및 합성수지대는 강인한 망사, 면사 또는 화학사로 꿰메고 기타는 탈루의 우려가 없도록 봉한다. 다만, 지퍼식 합성수지대는 아구리의 지퍼를 닫고 열리지 않도록 손잡이를 고정시킨다.
- 2) 필요한 경우에는 (1)의 자재중에서 동종 또는 이종을 겹으로 사용할 수 있다.
- 3) 상자의 결박

종 류	구분	자 재	품 질	자 리
프라스틱상자 골판지 상자	봉합	종이감테프	너비 38mm 이상	상·하 날개가 맞닿은 곳
		접착테프	너비 38mm 이상	
	결속	종이끈밴드	KSA 1524 규격에 따름	세로 2개소
		PP 밴드	KSA 1507 규격에 따름	세로 2개소
		스테플러	너비: 35mm 이상 침길이 : 15mm 이상	상·하 날개를 10cm간격으로 박음
목재상자	결속	종이끈밴드	KSA 1524 규격에 따름	세로 2개소
		PP 밴드	KSA 1507 규격에 따름	세로 2개소
		철선	14 - 16 번선	세로 2개소

2. 포장단위 : 1kg미만, 1kg, 2kg, 3kg, 4kg, 5kg, 10kg, 15kg, 20kg, 25kg, 30kg, 35kg, 40kg, 45kg, 50kg, 60kg, 100kg, 또는 거래 계약상의 포장중량

[별표 8]

사후관리시험의 기준 및 방법(제15조 관련)

1. 검사항목 : 품종의 순도, 품종의 진위성, 종자전염병
2. 검사시기 : 성숙기
3. 검사횟수 : 1회 이상
4. 검사방법

가. 품종의 순도

- 1) 포장검사 : 작물별 사후관리시험 방법에 따라 품종의 특성조사를 바탕으로 이형주수를 조사하여 품종의 순도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사
- 2) 실내검사 : 포장검사로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는 경우 유묘검사 및 전기영동을 통한 정밀검사로 품종의 순도를 검사

나. 품종의 진위성 : 품종의 특성조사의 결과에 따라 품종고유의 특성이 발현되고 있는지를 확인

다. 종자전염병 : 포장상태에서 식물체의 병해를 조사하여 종자에 의한 전염병 감염여부를 조사

[별표 9]

등록번호 및 신고번호 작성방법(제16조 및 제21조 관련)

1. 종자업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시·도) (시·군명) (연 도) (종자업분류) (등록번호)

가. 시·도 기호 : 공문서 수신처기호

나. 종자업분류 기호

- 1) 채소 : 10
- 2) 과수 : 20
- 3) 화훼 : 30
- 4) 버섯 : 40
- 5) 빵 : 50
- 6) 식량작물 : 60
- 7) 기타 : 70

2. 육묘업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시·도) (시·군명) (연 도) (육묘업분류) (등록번호)

가. 시·도 기호 : 공문서 수신처기호

나. 육묘업분류 기호

1) 채소 : 80

2) 화훼 : 90

3) 식량작물 : 100

3. 품종생산·수입 판매신고번호

□ □ - □ □ □ □ - □ □ □ □ - □ □ □

(작물분류)

(작물)

(연 도)

(신고번호)

[별표 10] <삭제 2010.12.16>

[별표 11]

수입적응성시험의 대상작물 및 실시기관(제24조 관련)

구분	대상작물	실시기관
1.식량작물(13)	벼, 보리, 콩, 옥수수, 감자, 밀, 호밀, 조, 수수, 메밀, 팥, 녹두, 고구마	한국종자협회
2.채소(18)	무, 배추, 양배추, 고추, 토마토, 오이, 참외, 수박, 호박, 파, 양파, 당근, 상추, 시금치, 딸기, 마늘, 생강, 브로콜리	한국종자협회
3.과수<삭제 2010.12.16.>		
4.화훼<삭제 2004.1.27.>		
5.버섯(11)	양송이, 느타리, 영지, 팽이, 잎새, 버들송이, 만가닥버섯, 상황버섯	한국종균생산협회
	표고, 목이, 복령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6.약용작물(22)	곽향, 당귀, 맥문동, 반하, 방풍, 산약, 작약, 지황, 택사, 향부자, 황금, 황기, 전칠, 파극, 우슬	한국생약협회
	백출, 사삼, 시호, 오가피, 창출, 천궁, 하수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7.목초·사료 및 녹비작물(29)	오차드그라스, 톨페스큐, 티모시, 페러니얼 라이그라스, 켄터키블루그라스, 레드톱, 리드카나리그라스, 알팔파, 화이트크로바, 레드크로바, 버즈풋트레포일, 메도우페스큐, 브롬그라스, 사료용 벼, 사료용 보리, 사료용 콩, 사료용 감자, 사료용 옥수수, 수수수단그라스 교잡종(Sorghum×Sudangrass Hybrid), 수수 교잡종(Sorghum×Sorghum Hybrid), 호밀, 귀리, 사료용 유채, 이탈리아 라이그라스, 헤어리베치, 콤먼벳치, 자운영, 크림손클로버, 수단그라스 교잡종(Sudangrass×Sudangrass Hybrid),	농업협동조합중앙회
8.인삼(1)	인삼	한국생약협회
9.산림 및 조경용 등 기타용도<삭제 2016.10.28>		

※ 실시기관 조정 시행 당시 수입적응성 시험이 신청되어 진행 중인 시험은 종전의 실시기관에서 시행한다.

수입적응성시험의 심사기준(제26조 관련)

1. 재배시험기간

재배시험기간은 2작기 이상으로 하되 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배시험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2. 재배시험지역

재배시험지역은 최소한 2개 지역 이상(시설 내 재배시험인 경우에는 1개 지역 이상)으로 하되, 품종의 주 재배지역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작물의 생태형 또는 용도에 따라 지역 및 지대를 결정한다. 다만, 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작물 및 품종의 특성에 따라 지역수를 가감할 수 있다.

3. 표준품종

표준품종은 국내외 품종 중 널리 재배되고 있는 품종 1개 이상으로 한다.

4. 평가형질

평가대상 형질은 작물별로 품종의 목표형질을 필수형질과 추가형질을 정하여 평가하며, 신청서에 기재된 추가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5. 평가기준

가. 목적형질의 발현, 기후적응성, 내병충성에 대해 평가하여 국내적응성 여부를 판단한다.

나. 국내 생태계보호 및 자원보존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어야 한다.

규격묘의 규격기준(제34조 관련)

1. 과수묘목

작 물	묘목의 길이(cm)	묘목의 직경(mm)	주요 병해충 최고한도
○ 사과			근두암종병(뿌리혹병): 무
- 이중접목묘	120 이상	12 이상	
- 왜성대목자근접목묘	140 이상	12 이상	
○ 배	120 이상	12 이상	근두암종병(뿌리혹병): 무
○ 복숭아	100 이상	10 이상	근두암종병(뿌리혹병): 무
○ 포도			근두암종병(뿌리혹병): 무
- 접목묘	50 이상	6 이상	
- 삽목묘	25 이상	6 이상	
○ 감	100 이상	12 이상	근두암종병(뿌리혹병): 무
○ 감귤류	80 이상	7 이상	궤양병: 무
○ 자두	80 이상	7 이상	
○ 매실	80 이상	7 이상	
○ 참다래	80 이상	7 이상	역병: 무

- 주) 1) 묘목의 길이 : 지제부에서 묘목선단까지의 길이
 2) 묘목의 직경 : 접목부위 상위 10cm 부위 접수의 줄기 직경. 단, 포도 접목묘는 접목부위 상하위 10cm 부위 접수 및 대목 각각의 줄기 직경, 포도 삽목묘 및 참다래는 신초분기점 상위 10cm 부위의 줄기직경
 3) 대목의 길이 : 사과 자근대목 40cm 이상, 포도 대목 25cm 이상, 기타 과종 30cm 이상
 4) 사과 왜성대목자근접목대표측지수 : 지제부 60cm 이상에서 발생한 15cm 길이의 결가지 5개 이상
 5) 배 잎눈 개수 : 접목부위에서 상단 30cm 사이에 잎눈 5개 이상
 6) 주요 병해충 판정기준 : 증상이 육안으로 나타난 주

2. 뽕나무 묘목

묘목의 종류	묘목의 길이(cm)	묘목의 직경(mm)
접목묘	50 이상	7
삽목묘	50 이상	7
회문이묘	50 이상	7

주) 1) 묘목의 길이 : 지제부에서 묘목 선단까지의 길이

2) 묘목의 직경 : 접목부위 상위 3cm 부위 접수의 줄기 직경. 단, 삽목묘 및 회문이묘는 지제부에서 3cm 위의 직경

3. 기타 : 관련 종자협회장이 정한다.

[별표 15]

규격묘의 표시(제35조제3항 관련)

□ 규격묘의 품질표지

※ 크기는 최소 10×3cm(가로×세로) 이상으로 한다.

(앞면)

규격묘의 품질표지					
①작물 의류		②품종명		③대목명	
④업체명 (종자업 등록번호)		⑤품종생산 ·판매신고 번호		⑥생산년도	
⑦주요병해충 유무					

(뒷면)

※ 품종의 특성 및 재배상의 주의사항

[별표 16]

보관하기 곤란한 종자(제38조 관련)

분 류	작 물
○ 식량작물	고구마, 감자
○ 특용작물	상업적으로 영양변식하여 유통되는 작물
○ 채소작물	마늘, 딸기, 생강, 토란, 쪽파, 기타 상업적으로 영양변식하여 유통되는 작물
○ 화훼 및 과수작물	상업적으로 영양변식하여 유통되는 작물

[별표 17]

종자산업진흥센터 시설기준(제39조 관련)

시설구분		규모(m ²)	장비 구비 조건
분자표지 분석실	필수	60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료분쇄장비 ▫ DNA추출장비 ▫ 유전자증폭장비 ▫ 유전자판독장비
성분분석실	선택	60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료분쇄장비 ▫ 성분추출장비 ▫ 성분분석장비 ▫ 질량분석장비
병리검정실	선택	60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균주배양장비 ▫ 병원균 접종장비 ▫ 병원균 감염확인장비 ▫ 병리검정은온실(33m²이상, 도 설치 가능)

※ 선택 시설(성분분석실, 병리검정실) 중 1개 이상의 시설을 갖출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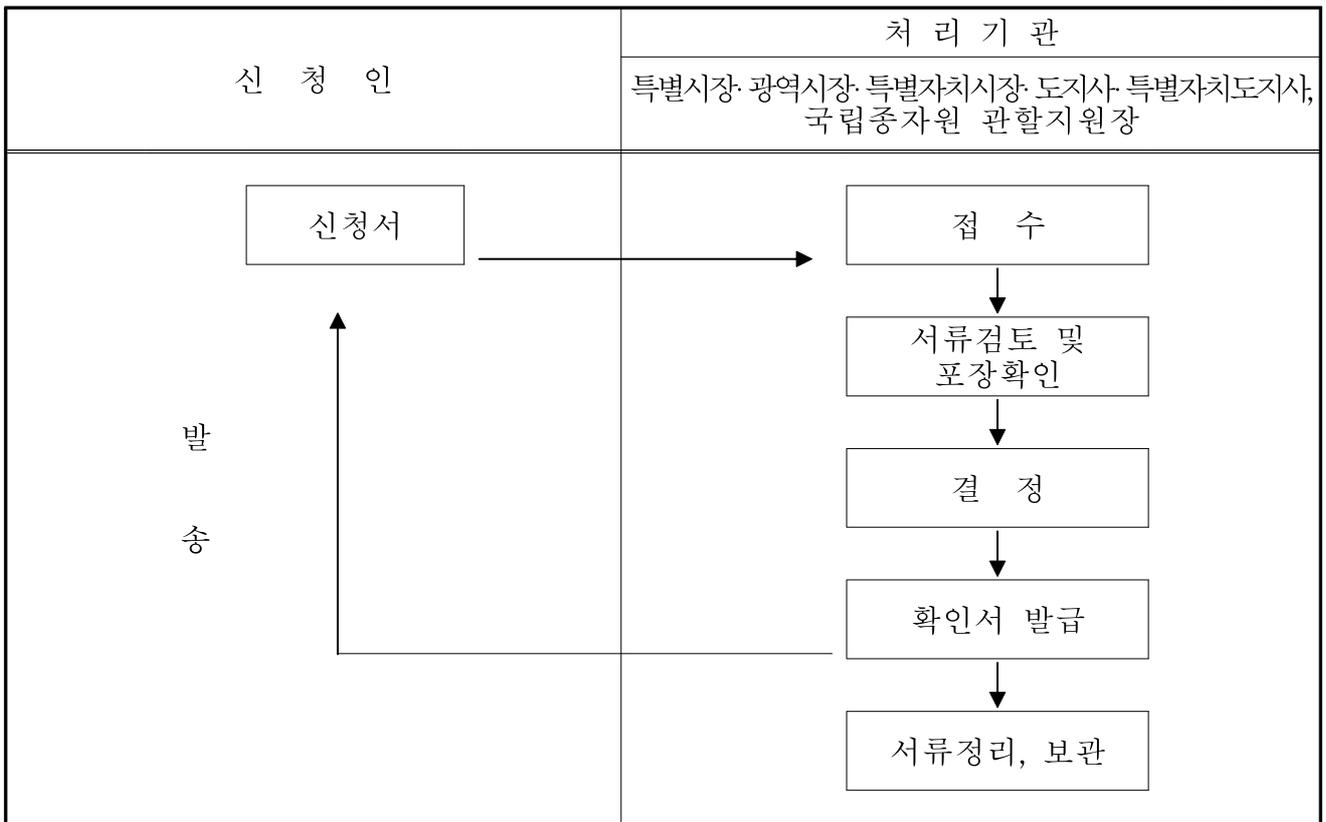
접수인란		결재인란	
종자생산대행신청서			
신청서	①성 명		②생 년 월 일
	③주 소		④전 화 번 호
⑤작물의 일반명		⑥품종의 명칭	
⑦포 장 면 적(a)		⑧책임생산량(kg)	
⑨포장소재지			
⑩다 짐 사 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종자생산, 검사, 수매 등 처분은 정부 또는 관계기관의 지도에 따르겠습니다. 2. 사용종자는 반드시 정부 또는 관계기관에서 공급하는 종자를 사용하겠습니다. 3. 종자생산은 반드시 정부 또는 관계기관에서 지정한 포장에서 생산하겠습니다. 4. 정부 또는 관계기관에서 지정한 생산책임량을 성실히 생산하겠으며, 미 이행에 따른 불이익(채종단지 제외, 원종대금 회수 등)을 감수하겠습니다. 5. 기상조건이나 생리적인 장애 기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종자검사에 불합격하여 수매하지 못한 경우 정부 또는 관계기관에서 일부 지급하는 생산장려금 이외 별도의 보상요구를 하지 않겠습니다. 6. 우량종자 생산을 위하여 단기간, 채종농가간 상호보완적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채종과정에서 발생된 제반문제 해결 등 원활한 종자생산을 도모하겠습니다. 	
종자관리요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국립종자원 관할지원장 귀하			

40512-09811(민)
'98.5.2.승인

210mm×297mm
신문용지 54g/m²

이 신청은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쪽)



※ 작 성 요 령

1. 문자는 검정색을 사용하여 한글로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타자 또는 컴퓨터로 출력함을 원칙으로 합니다(필요한 경우에는 괄호안에 원어를 함께 쓸 수 있습니다).
2. 서식중 해당사항이 없는 “란”은 서식에서 삭제하고, 신청인이 2인이상인 경우와 같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란”을 증설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①성명”란에 다음 예와 같이 법인의 공식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하며, “②생년월일”란은 대표자의 생년월일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 가 나 다 주식회사
 대표이사 홍 길 동
4. “③주소”란에는 신청인이 자연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본사 주소를 다음 예와 같이 완전하게 기재하고, 반드시 주소 끝의 괄호안에 우편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 ○○도 ○○시(군) ○○동(면) ○○리 ○○번지(△△△-△△△)
 ※ 시, 도 명칭은 2자리 약칭을 사용하여도 좋음
 (서울특별시→서울, 충청북도→충북)
5. “⑤작물의 일반명”란에는 품종이 속하는 작물의 일반명을 다음 예와 같이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 일반명 : 양과
6. “⑨포장소재지”란에는 종자생산포장의 주소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종자생산대행확인서			
신청서	①성명		②생년월일
	③주소		④전화번호
	⑤작물의 일반명		⑥품종의 명칭
	⑦포장면적(a)		⑧책임생산량(kg)
	⑨포장소재지		
⑩다짐사항	1. 종자생산, 검사, 수매 등 처분은 정부 또는 관계기관의 지도에 따르겠습니다. 2. 사용종자는 반드시 정부 또는 관계기관에서 공급하는 종자를 사용하겠습니다. 3. 종자생산은 반드시 정부 또는 관계기관에서 지정한 포장에서 생산하겠습니다. 4. 정부 또는 관계기관에서 지정한 생산책임량을 성실히 생산하겠으며,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채종단지 제외, 원종대금 회수 등)을 감수하겠습니다. 5. 기상조건이나 생리적인 장애 기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종자검사에 불합격하여 수매하지 못한 경우 정부 또는 관계기관에서 일부 지급하는 생산장려금 이외 별도의 보상요구를 하지 않겠습니다. 6. 우량종자 생산을 위하여 단기간, 채종농가간 상호보완적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채종과정에서 발생된 제반문제 해결 등 원활한 종자생산을 도모하겠습니다.		
종자관리요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년도 종자생산대행자로 위와 같이 지정합니다.			
년 월 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국립종자원 관할지원장 인			

40512-09911(비)
'98.5.2.승인

210mm×297mm
보존용지(2종) 70g/m²

[별지 제3호서식] <삭제>

[별지 제4호 및 제5호 서식] : <삭제, 2002.11.13>

[별지 제6호서식] : <삭제, 2002.11.13>

[별지 제7호서식]

수입적응성시험확인품종목록

등재번호	등록일자	작물종류	품종명칭	육성자	등재신청인	품종특성

40512-11711(비)
'98.5.2.승인

210mm × 297mm
보존용지(2종) 70g/m²

접수인란		결재인란	
수입적응성시험확인신청서			
신청인	① 성 명 (대 표 자)	② 생 년 월 일 (외국인은 국적)	
	③ 주 소		
	④ 법 인 명 칭	⑤ 전 화 번 호	
수입적응성 확인대상품종	⑥ 품 종 명 칭	⑦ 육 성 자	
	⑧ 등 재 번 호	⑨ 등 재 일 자	
<p>종자관리요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년 월 일</p> <p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margin-top: 20px;">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p> <p style="margin-top: 20px;">농림업 관련법인 또는 단체 귀하</p>			

수입적응성시험확인서

신청인	① 성 명 (대 표 자)		② 생 년 월 일 (외국인은 국적)	
	③ 주 소			
	④ 법 인 명 칭		⑤ 전 화 번 호	
확인내용	⑥ 품 종 명 칭		⑦ 육 성 자	
	⑧ 등 재 번 호		⑨ 등 재 일 자	

종자관리요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적응성시험확인품종 목록대장에 등재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농림업 관련법인 또는 단체 인

[별지 제9호의2 서식]

종자수입 요건확인(신청)서

①요건신청번호		②요건확인번호	
③ 수입자(사업자등록번호 :) -상호 -주소 -성명	⑥ 원산지 :		
	⑦ 선적항 :		
	⑧ 가격조건 :		
④ 위탁자(사업자등록번호 :) -상호 -주소 -성명	⑨ 선적일 :		
	⑩ 도착예정일 :		
	⑪ B/L번호 :		
⑤ 수출자(송하인) :	⑫ 유효기간 :		
● 품목(란번호/총란수)			
⑬ HS부호		⑭ 용도	
⑮ 거래품명		⑯ 수량 (단위)	()
⑰ 금액 (단위)	()	⑱ 중량 (단위)	()
⑲ 작물 및 품종	⑳수량(단위)	㉑중량(단위)	㉒금액()
⑳ 접종일자	20 . . . * 표고 종균접종·배양배지에 한함		
㉔ 승인조건			
위 종자에 대해 종자관리요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자수입 요건확인을 신청합니다. <div style="text-align: right;">20 . . . 신청인 (인)</div>			
위 종자는 종자관리요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가능 품종임을 확인합니다. <div style="text-align: right;">20 . . . 종자수입 요건확인기관의 장 (인)</div>			

종자시료수거확인서

①시료제공자	②작 물 명	③품종명칭	④등록번호	시료채취량		
				⑤단 위	⑥포장규격	⑦수 량
⑧계						

「종자산업법」 제45조제1항 및 종자관리요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자시료를 상기와 같이 수거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관계공무원

소 속

직 · 성명

(인)

시료제공자

주 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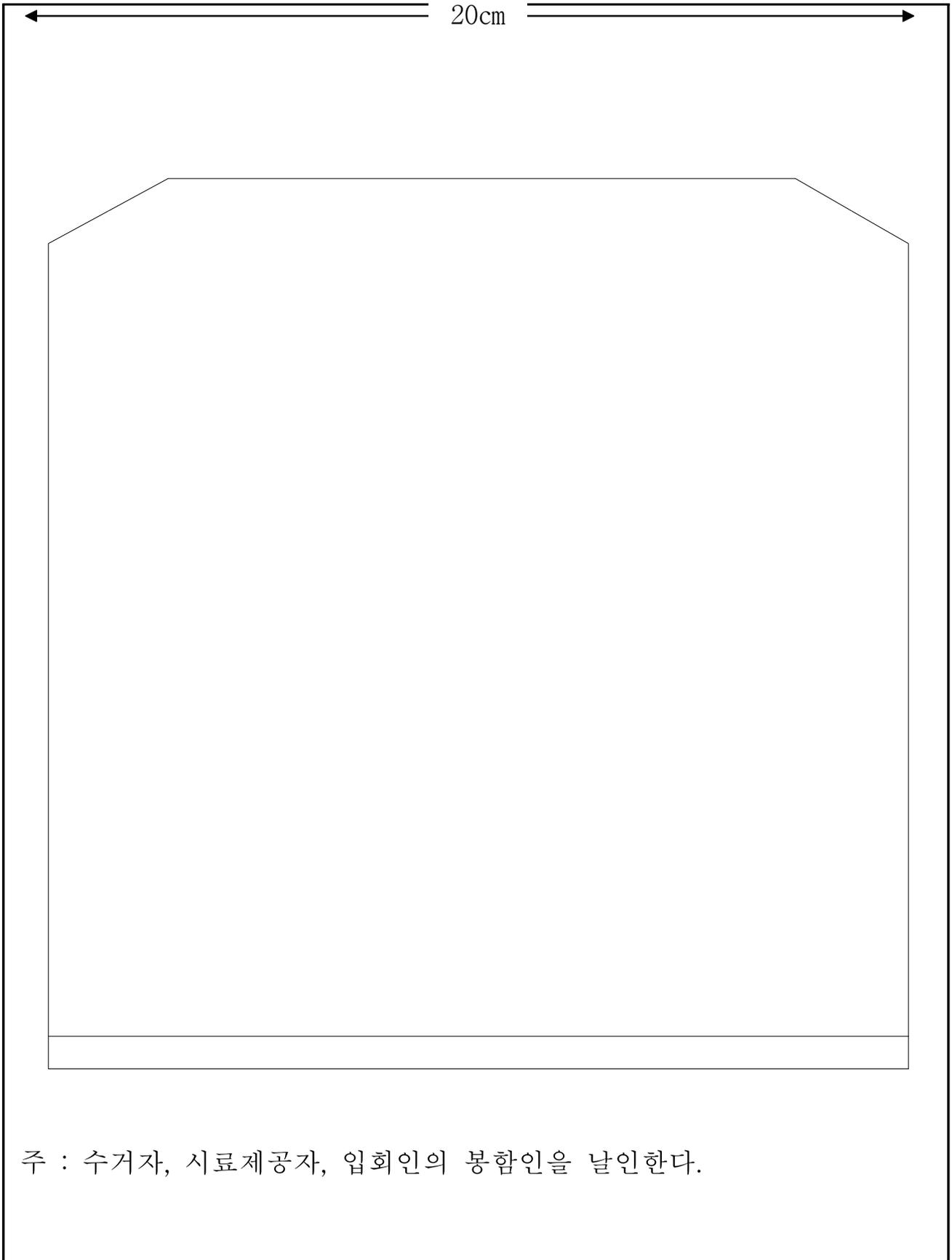
주민등록번호

성명

(인)

귀하

(뒷면)



발부번호 : <h2 style="margin: 0;">불법불량종자수거목록서</h2>					
피수거자	① 성 명			② 생 년 월 일	
	③ 주 소			④ 상호 또는 업체명	
수거내용	⑤ 수거종자의 품종명칭	⑥ 수거량		⑦ 포장상태	⑧ 피수거자확인
		단위	수량		
⑨수거사유					
<p>(1) 상기 종자는 「종자산업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법 또는 불량종자이므로 수거하는 것이며 이 종자는 수거일로부터 1년간 보관합니다.</p> <p>(2) 보관기간이 경과되면 종자로서 사용할 수 없도록 형질을 변경시켜 귀하에게 반환하여 드립니다.</p> <p>(3)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수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 . . .</p> <p style="text-align: center;">소 속 :</p> <p style="text-align: center;">관계공무원 : (인)</p>					
<p>주 : 1. 본 서식은 원본을 보관하여야 합니다.</p> <p style="margin-left: 40px;">2. 피수거자 확인란은 종자수거시 해당 종자를 수거 또는 소지한 자나 입회인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p>					

○ ○ 도
(전화번호)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20 . . .

받는곳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제 목 : 유통종자단속실적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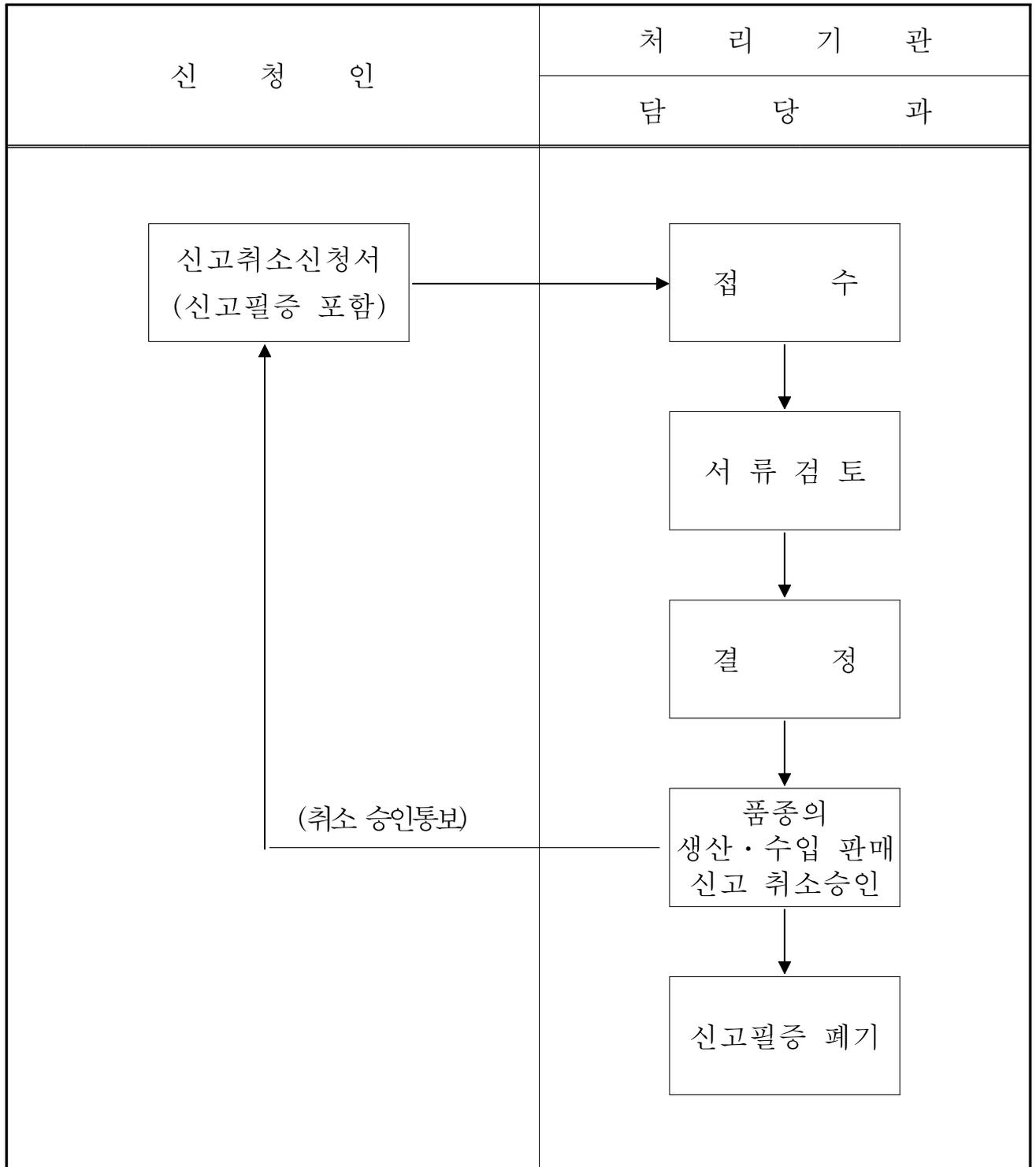
종자관리요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통종자단속실적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구분 시군	①단속 회수	②단속 연인원	③단속 건수	조 치 내 용					⑨비고
				④고발	⑤등록 취소	⑥영업 정지	⑦경고	⑧기타	

※ 주) ⑨비고란에는 조치내용별 사유, 고발 및 등록취소 일자, 영업정지 기간 등을 기입

이 신청은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쪽)



※ 작성요령

1. “⑪취소 사유”란에는 신고자(대리인)가 신고를 취소하는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2. 그 밖의 사항은 별지 제1서식의 ※ 작성요령중 1. 내지 4.와 같이 기재하여야 합니다.